

---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 및 체계개선 연구

---

2025.01.2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KAPA 한국행정학회

# 제 출 문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균형발전 전략 및 체계개선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한국행정학회  
회장 이덕로

연구책임자: 황성원 (군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김세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훈 (IBS컨설팅 컴퍼니 수석연구위원)

## 〈목차〉

제1장 연구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 .....	2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3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개요 및 연혁 .....	5
제1절 지역균형발전의 개요 .....	5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	5
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	6
3.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	7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혁 .....	13
1.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혁 .....	13
2.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간 비교 .....	21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불균형 현황분석 및 균형발전정책의 주요이슈 도출	23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불균형 현황 분석 .....	23
1.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	23
2. 경북연구원 경북 균형발전지표 .....	25
3. KDI 지역낙후도지수 .....	26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불균형 발전 현황 .....	27
1. 전국 광역자치단체 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정도 측정 .....	27
2.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간 불균형 현황 분석 .....	28
3.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간 불균형 분석결과 함의 .....	38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정책 비교 .....	40
1.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계획 .....	40
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 .....	52
3.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과 서남권, 새만금권 기초자치단체 간 발전전략 비교결과 시사점 .....	59
제4장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 및 조직체계 사례분석 .....	61
제1절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	61
1. 광역 도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	61
2. 광역 도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결과 .....	68

제2절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조직 사례분석 .....	72
1. 전북특별자치도 .....	72
2. 경기도 .....	73
3. 충청북도 .....	75
4. 충청남도 .....	77
5. 전라남도 .....	80
6. 경상북도 .....	82
7. 경상남도 .....	84
8. 강원특별자치도 .....	87
9. 제주특별자치도 .....	91
10.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체계 종합 및 시사점 .....	92
제5장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안 및 조직체계 제안 .....	97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97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균형발전 조직(안) .....	106
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 방향성 .....	106
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안) .....	106
3.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기능 조정안 .....	108
참고 문헌 .....	110

## 〈표 목차〉

〈표 2-1〉 균형발전 관련 「헌법」 및 「국토기본법」 조항 .....	7
〈표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변화 .....	8
〈표 2-3〉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현황 .....	9
〈표 2-4〉 광역지자체 조례별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	10
〈표 2-5〉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학문적 정의 .....	11
〈표 2-6〉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관련 문제점 인식 .....	13
〈표 2-7〉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4대 발전전략 .....	16
〈표 2-8〉 문재인 정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3대 분야별 발전전략 .....	19
〈표 2-9〉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간 비교 .....	22
〈표 3-1〉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객관지표) .....	23
〈표 3-2〉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주관지표) .....	24
〈표 3-3〉 경북연구원 경북 균형발전지표 .....	25
〈표 3-4〉 KDI 지역낙후도지수 .....	26
〈표 3-5〉 동부권 발전계획과 발전사업단계의 시기비교 .....	40
〈표 3-6〉 제1차 동부권 발전계획 부문별 세부추진사업 .....	42
〈표 3-7〉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부문별 세부추진사업 .....	46
〈표 3-8〉 1-2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	49
〈표 3-9〉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	50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5개 권역 연계를 위한 3×3 격자형 발전축 구상 .....	53
〈표 3-11〉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	56
〈표 3-12〉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 내 정읍 대상 사업 .....	57
〈표 3-13〉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	58
〈표 3-14〉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 내 군산 대상 사업 .....	59
〈표 4-1〉 광역 도 균형발전 조례 비교표 .....	62
〈표 4-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73
〈표 4-3〉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73
〈표 4-4〉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74
〈표 4-5〉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75
〈표 4-6〉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76
〈표 4-7〉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76
〈표 4-8〉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78
〈표 4-9〉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79
〈표 4-10〉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81
〈표 4-11〉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81
〈표 4-12〉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83
〈표 4-13〉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84

〈표 4-14〉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86
〈표 4-15〉 경상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87
〈표 4-16〉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88
〈표 4-17〉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90
〈표 4-18〉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	91
〈표 4-19〉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	92
〈표 4-20〉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 및 인력 종합 .....	92
〈표 4-21〉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배치 시사점 .....	93
〈표 4-22〉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의 기능 종합 .....	95
〈표 5-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본 .....	98
〈표 5-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의 주요기능(1안을 중심으로) .....	108

## 〈그림 목차〉

〈그림 2-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	5
〈그림 2-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15
〈그림 3-1〉 지역발전지수 .....	27
〈그림 3-2〉 인구증감률 .....	28
〈그림 3-3〉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29
〈그림 3-4〉 노후주택비율 .....	30
〈그림 3-5〉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31
〈그림 3-6〉 소방서 접근성 .....	32
〈그림 3-7〉 하수도보급률 .....	33
〈그림 3-8〉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34
〈그림 3-9〉 경제활동참가율 .....	35
〈그림 3-10〉 지역내총생산 .....	36
〈그림 3-11〉 재정자립도 .....	37
〈그림 3-12〉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비전·전략체계 .....	41
〈그림 3-13〉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비전·목표·부문별 전략 .....	45
〈그림 3-14〉 전북특별자치도 5권 특화 전략 .....	52
〈그림 3-15〉 전북특별자치도 5권 특화 전략 맵 .....	53
〈그림 3-16〉 전북특별자치도 5권 연계 3×3 격자형 발전축 .....	55
〈그림 4-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72
〈그림 4-2〉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74
〈그림 4-3〉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75
〈그림 4-4〉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77
〈그림 4-5〉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80
〈그림 4-6〉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82
〈그림 4-7〉 경상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85
〈그림 4-8〉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88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91
〈그림 5-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1안) .....	107
〈그림 5-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2안) .....	107



# 제1장 연구개요

## 제1절 연구배경

- 지역균형 발전은 김영삼정부 시대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책
- 노무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및 지방에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기관을 이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음
- 하지만, 위와 같은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바로 지역내 불균형을 초래하였다는 점이었음
- 지역내 불균형 문제는 특광역시보다 광역 도 지역내에서 더 심각하여 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산업, 인구 등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소멸 예상지역으로 분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역량 배양 필요

## 제2절 연구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불균형 현황 조사 분석
  - 주요 분야 지표들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불균형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도출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 수립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균형발전 방향과 전략을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모색
  - 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불균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타 시·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분석하여 균형발전 사업 제시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역균형발전 조직, 인력 등 균형발전추진체계 개선방안 제시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산업 등 주요 불균형 발전 현황 조사
  - 분야별 주요 지표에 따른 불균형 현황 분석
  -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인프라(도로, 철도 등), 경제·산업, 교육·문화 등의 불균형 현황 조사·분석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함
  
-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발전전략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간 차이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함
  
- 셋째, 광역 도를 중심으로 조례 및 조직·인력·기능 사례분석
  -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등의 광역 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례 비교·분석
  - 충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등의 광역 도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직, 인력, 기능을 비교·분석
  - 위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도출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
  
- 넷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추진체계 수립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조례안 제안
  -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및 기능 안 제안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팀 담당자의 심층면접,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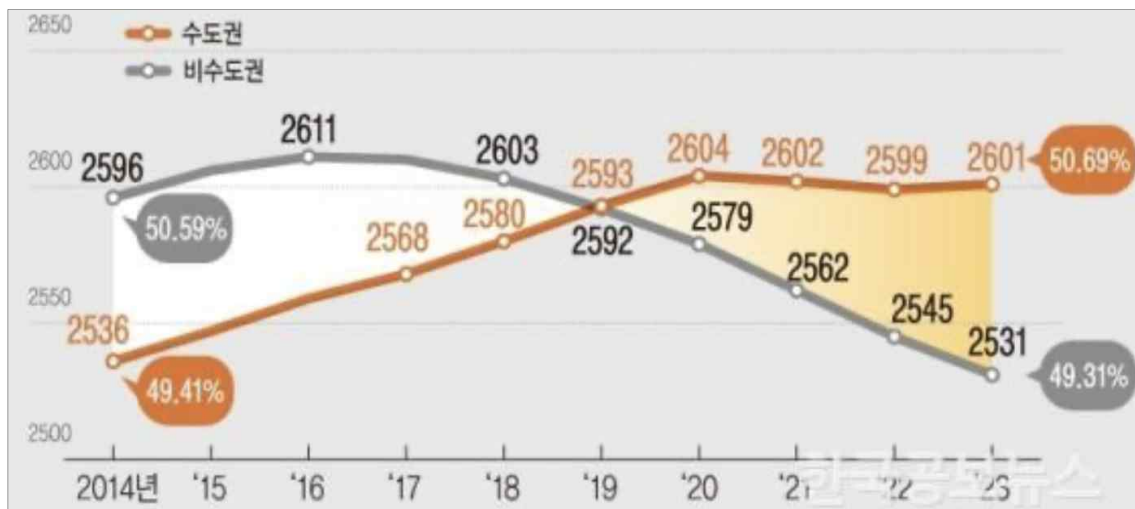
##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개요 및 연혁

### 제1절 지역균형발전 개요

#### 1.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나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는 과정(국회도서관, 2022)으로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임. 이에 우리나라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팽창이 심화되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확대되고 있음
  - 수도권 팽창과 지방소멸의 양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음.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중은 2014년 수도권 49.41%와 지방 50.59%에서 2019년 50.00%로 교차한 이래 2023년 12월 수도권 50.69%와 지방 49.31%에 이르렀음(한국공보뉴스, 2024.01.10.)

〈그림 2-1〉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출처: 한국공보뉴스(2024.01.10.)

- 반면, 지방의 인구는 대해 감소하여, 2024년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이 13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뉴데일리 경제, 2024.6.28.)
- 지역 불균형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 혼잡, 환경오염으로, 비수도권은 일자리, 생활 인프라,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겪음
- 특히,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 일자리, 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수도권 및 도시로 주거지를 이동하며 지방은 인구유출과 감소를 대해 겪고 있음. 또한, 학령인구 유출 및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인해 교육 인프라가 악화되며, 정주여건 저하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정책, 계획들을 수립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지방소멸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소멸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함

## 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근거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할 의무로서 헌법 제120조 제2항(국토의 균형), 제122조(국토의 균형), 제123조 제2항(지역 간 균형)에 명문화되어 있음. 이에 「국토기본법」에서는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3조 제2항(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박세훈, 2020)

〈표 2-1〉 균형발전 관련 「헌법」 및 「국토기본법」 조항

법령명	조항	내용
헌법	헌법 전문 (국민생활의 균등)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120조 제2항 (국토의 균형)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토의 균형)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지역 간 균형)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토 기본법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01.01.)

### 3.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 1) 지역균형발전의 법적 정의

-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이러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함
- 최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박세훈, 2020)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제정된 이후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따라 전면적인 법 개정을 거쳐왔음.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2-2>와 같이 변화해 왔음(송우경, 2018: 7)

<표 2-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정의 변화

법령명	용어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4)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	지역발전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	지역발전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23)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 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 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함

## 2) 지역균형발전의 조례상 정의

- 총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표 2-3> 참조)
  - 인천광역시는 2005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2022년 해당 조례를 폐지함

- 대전광역시 2007년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2015년 해당 조례를 폐지함

○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보유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14개는 각 광역지자체 전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도(道)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권을 특정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이란 14개 기초자치단체(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중, 상대적 발전이 미진한 동부권에 위치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6개 지역을 지칭함

〈표 2-3〉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현황

순번	광역지자체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	조례 유무	
			유	무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	
9	경기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10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	
11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	○	
13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	
14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15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1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b>광역지자체 수</b>			<b>15</b>	<b>2</b>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보유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10개(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조례에 지역균형발전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지자체별 정의는 <표 2-4>와 같음
- <표 2-4>에 따르면, 10개 광역지자체 조례의 ‘지역균형발전’ 정의는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특성 고려’, ‘균형발전(낙후지역 개발)’,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 ‘삶의 질 향상’, ‘지방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4> 광역지자체 조례별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순번	지자체	정의
1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정체성과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낙후된 분야와 발전저해요인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 증진 및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 증진 및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8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 증진 및 경쟁력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U-LEX 법률 우주(<https://www.ulex.co.kr>) (검색일: 2025.1.1.)

### 3) 지역균형발전의 학문적 정의

- ‘균형발전’이 국가적 의제로 등장한 이후, 다양한 학자들이 지역균형발전의 학문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려고 노력해 옴. 예를 들어, 최진혁(2015)은 균형발전을 “국토 모든 지역을 차별성 없게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으로, 김현호·김도형(2018)은 “모든 지역의 고유자원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적 통합성을 달성하며,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학문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표 2-5>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학문적 정의

순번	연구자	정의
1	조명래 외 (2013)	사회적 기회, 자원, 권력이 지역간 골고로 분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이 및 삶의 기회의 격차를 시정
2	강기춘 (2015)	지역을 유지·존속시키는 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요소의 지역 간 차이를 완화시켜 국가 내 여러 지역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된 상태
3	이병규 (2018)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발전의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
4	최진혁 (2015)	국토 모든 지역을 차별성 없게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
5	안흥기 외 (2017)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측면에서 상이한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기인되는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경제발전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6	김동한 외 (2018)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균등한 수준을 가지는 것
7	김현호 (2019)	지역 주민의 역량 형성,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개방, 거버넌스, 정책 제도환경 조성 등 지역간 및 지역내 다차원적 및 다부문적 포용적 발전의 추구
8	박인권 (2025)	거시적인 지역 간 균형과 지역 내 격차 해소를 함께 목표로 하는 사회적 포용 정책으로서, 지역 위치와 규모, 내부 구성원의 여건 등 다양성을 고려한 발전과 분권화를 추구하는 것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살펴보면, 균형발전의 정의는 지역간 발전 격차 감소, 지역의 자립역량 제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종합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간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균등하도록 하는 요건을 구비하여(박세훈, 2020), 지역의 자립역량,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제2절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혁

### 1.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연혁

- 2024년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박근혜 정부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각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특정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설계·추진하였음. 각 정부가 정책적 대응의 시급하다고 판단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 정부별 지역균형발전 관련 문제점 인식

정부	정책 강조점
노무현 정부	수도권과 지방 간 발전 격차
이명박 정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부족
박근혜 정부	지역 주민의 낮은 '삶의 질'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의 취약성,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쇠퇴, 농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

\*출처: 안홍기 외(2017)

- 본 절에서는 각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개요(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주요 정책 등)와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함

#### 1)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비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
- 목표: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 추진
- 추진전략
  -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
  -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지역 간 격차 시정, 도·농 간의 상생발전

- 수도권 의 질적 발전 추구: 수도권 규제 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 의 경쟁력 증진
-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동서 횡축 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국내외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 ○ 추진체계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등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

#### ○ 주요 정책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 수도권 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건설
  - 해당 정책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
- 혁신도시 정책: 정부 소속 및 출연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 10개 지역(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나주, 김천, 대구, 울산, 진주, 부산, 서귀포)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

#### ○ 추진방향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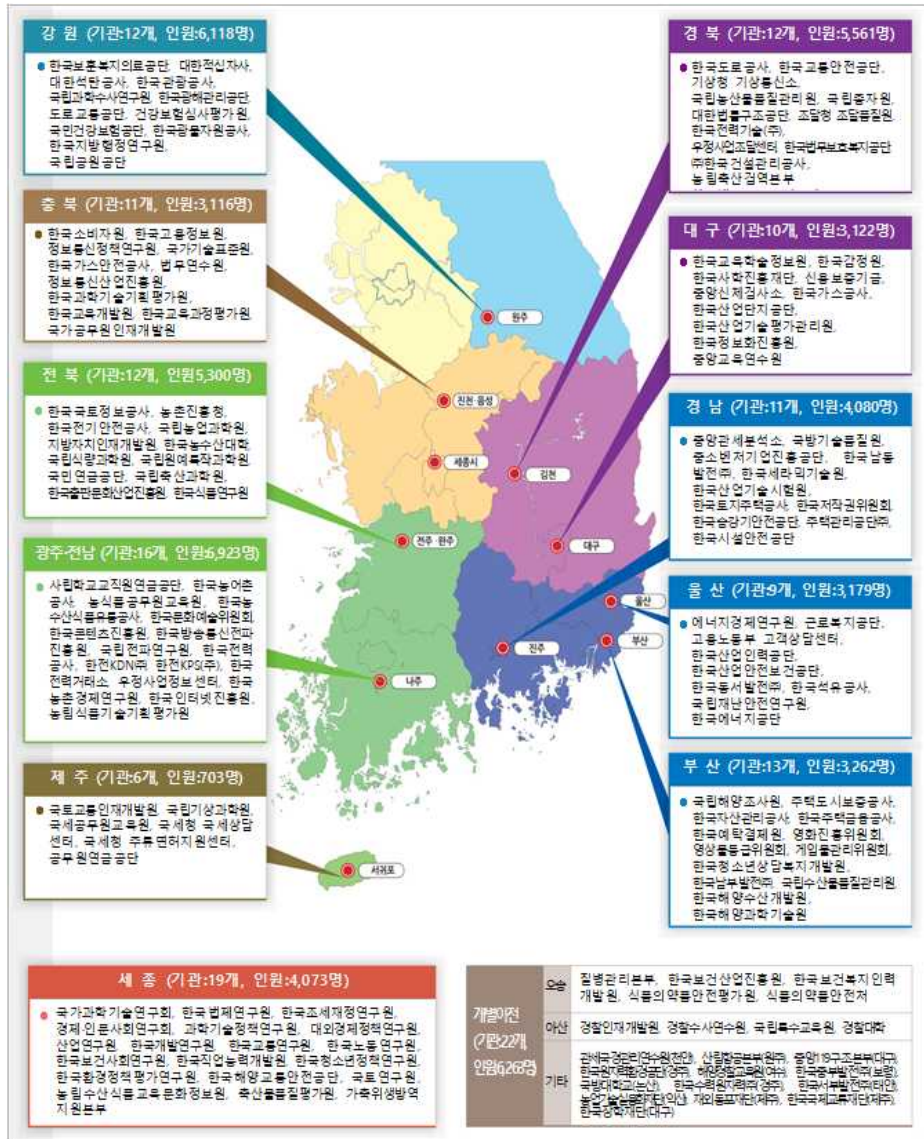
-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 각기 추진되어 정책 연계와 통합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송우경, 2017)
-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와 균형발전 거점 형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추진함. 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 성과

- 균형발전이라는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이성근 외, 2013)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실천함(송우경, 201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소재 153개 공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됨.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2-2>과 같음

<그림 2-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2019: 3)

○ 한계

-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소속 이전 기관 직원의 '삶의 질'이 저하됨(균형발전위원회, 2018)
-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현상이 발생함(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비전: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 추진전략: 4대 발전전략을 수립

〈표 2-7〉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4대 발전전략

4대 발전전략	목표
“5+2” 광역경제권	성장 잠재력 확충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a 초광역개발권	개방·협력의 촉진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지역주도·상생발전

\*주1: “5+2” 광역경제권이란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경제권(강원권, 제주권)으로 구성

\*주2: 4+a 초광역개발권이란 동해안 에너지/관광 벨트, 서해안 신산업 벨트, 남해안 선벨트, 접경 생태/평화 벨트 등 4개 벨트와 복수의 내륙 벨트(강원-전북 첨단산업 벨트, 강원-경남 백두대간 벨트, 대구-광주 벨트 등)로 구성

\*출처: 지역발전위원회(2009)

### ○ 추진체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편성

### ○ 주요 정책

- 3차원(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 정책
  - 163개 시·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권 정책’, 5+2 경제권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정책’, 4+a 벨트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 정책’의 상호보완적 추진
-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22개 포괄보조금 통합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중앙정부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 및 지방 계획 개발권 확대

### ○ 추진방향 및 내용

-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기초생활권 정책, 광역경제권 정책, 초광역개발권 정책 간 상호보완적 추진을 통해 국토성장 잠재력의 증진을 추진함. 전체

국도를 5개 광역권과 2개 준광역권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선도산업 지정 및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춤(송우경, 2017)

- 이명박 정부는 또한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방의 계획 및 개발권을 확대하고자 함(이원섭 외, 2018)

○ 성과

- 광역경제권 개념을 제시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연계협력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함(송우경, 2017)

○ 한계

- 수도권 규제 완화,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균형발전이 상대적으로 위축됨(균형발전위원회, 2018)
-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축소, 예산 사전조정 기능 축소 등으로 균형발전 추진 동력이 약화됨(균형발전위원회, 2018)
- 경쟁적 국책사업 선정 방식으로 인해 광역경제권 내 지역 이해갈등을 유발됨(차재권, 2017)

**3)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 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 Happiness: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 Opportunity: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관계
- Everywhere: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 추진전략: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 중점추진 분야: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과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 추진체계

-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추진체계를 활용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지역발전특별회계 마련

○ 주요 정책

-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충족하는 주민일상생활 공간을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 연계 권역을 구성함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과 창의적 인재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의 5개 중점 추진분야를 추진함

○ 추진방향 및 내용

-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에 초점을 두어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이 불편함 없이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 공간으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임(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의 광역발전계획을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하여 시·도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재조정함(김현호 외, 2019)

○ 성과

- 생활권 중심 정책(새뜰마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체감도가 향상됨(균형발전위원회, 2018)
- 이명박 정부의 ‘광역’ 중심 균형발전을 ‘시·도’ 중심 균형발전으로 전환하여,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됨(김현호 외, 2019)

○ 한계

-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여,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지역발전 지원에 한계를 겪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생활권 문제 중심의 미시적 접근으로,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과 광역적 발전전략 수립이 미흡해짐(균형발전위원회, 2018)
- 지방의 일자리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하였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4)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 목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전략: 3대(사람, 공간, 산업) 분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세부적 국가균형발전 전략 및 과제를 수립함

〈표 2-8〉 문재인 정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3대 분야별 발전전략

분야	전략	주요 과제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구축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강소지역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 ○ 추진체계

- 노무현 정부의 추진체계를 대부분 복원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복원
-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신설하고,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여 지역 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 ○ 주요 정책

-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예산지원을 안정적으로 획득
-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도시 발전전략 및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

○ 추진방향 및 내용

-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주도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진승호, 2021)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혁신도시 발전 및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또한, 균형발전 총괄지표를 개발하여 재정사업 지원지역 선정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진승호, 2021)

○ 성과

-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지역별 선도산업 육성,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중핵기업 지역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진승호, 2021)
-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교육 및 문화 분야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함(진승호, 2021)

○ 한계

- GTX 건설,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5)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 지방시대 4대 가치

- 자율: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 공정: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 연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희망: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추진

○ 지방시대 5대 전략: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

는 맞춤형 생활복지

○ 추진체계

-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 주요 정책

- 기회발전특구 조성: 산업 육성 및 지원, 근로자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주도의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 및 지방인구 유인을 촉진
- 교육발전특구 조성: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협력을 통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공교육, 대학진학·취업 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대도시 도심의 산업, 주거, 문화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별 비교우위의 첨단산업 육성: 지역주도의 첨단산업 거점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 조성
- 농어촌공간계획 수립: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한 재정 지원

## 2.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간 비교

- 정부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내용을 비교·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2-9〉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간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	<p><b>노무현 정부</b></p> <p>비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p> <p>목표: 지역혁신체계(RIS)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p> <p>추진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 지역별 혁신클러스터의 육성</li> <li>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지역 간 격차 시정, 도·농 간의 상생발전</li> <li>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권의 경쟁력 증진</li> <li>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동서 황축의 새로운 대동맥 형성, 국내외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li> </ul>	<p><b>이명박 정부</b></p> <p>비전: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p> <p>부문별 계획: 4대 발전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2" 광역경제권 → 성장 잠재력 확충</li> <li>163개 시·군 기초생활권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li> <li>4+α 초광역개발권 → 개방·협력의 촉진</li> <li>지방분권·규제 합리화 → 지역주도·상생발전</li> </ol> <p>광역권별 계획: "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대 광역경제권</li> <li>2대 특별경제권</li> </ul>	<p><b>박근혜 정부</b></p> <p>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p> <p>추진 전략: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p> <p>중점 추진 분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li> <li>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li> <li>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li> <li>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li> <li>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li> </ol>	<p><b>문재인 정부</b></p> <p>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p> <p>목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p> <p>전략 및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li> <li>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반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체계구축</li> <li>사람 안착되고 활력 있는 삶</li> <li>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li> <li>균형발전 지원체계</li> <li>혁신</li> <li>산업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혁신</li> <li>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혁신</li> <li>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제도막</li> <li>인구감소지역을 거주 감소지역으로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li> </ul>
	<p>추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위원회</li> <li>●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위원회</li> <li>● 지역발전 5개년계획</li> <li>●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위원회</li> <li>● 지역발전 5개년계획</li> <li>● 지역발전특별회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위원회</li> <li>●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li> </ul>
<p>주요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중심복합 도시 추진</li> <li>● 지역혁신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원 지역발전 정책</li> <li>● 행·재정 권한 지방 이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행복생활권 구성</li> <li>●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li> <li>● 지역균형뉴딜</li> </ul>	
<p>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li> <li>●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구축</li> <li>● 공공기관 지방이전 합의 도출·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경제권 개념을 통해 연계협력 사업 추진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삶의 질' 체감 향상</li> <li>● 시·도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지방 이전</li> <li>● 지역별 선도산업 육성</li> <li>●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육성</li> </ul>	
<p>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이전 기관 직원 '삶의 질' 저하</li> <li>● 이전 지역 선정의 형평성 논란 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균형발전 추진 동력 약화</li> <li>● 경쟁적 국책사업으로 갈등 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발전위원회 기능 미약</li> <li>● 지방 성장동력, 광역 발전전략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TX 건설, 3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초래 및 균형발전 역행</li> </ul>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불균형 현황분석 및 균형발전정책의 주요이슈 도출

##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불균형 현황 분석

- 본 절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경북 균형발전지표’, ‘KDI 지역 낙후도 지수’를 검토하고자 함

### 1.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 목적: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구성: 핵심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 1) 핵심지표: 인구증감률(4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3개년 평균) 등 2개 지표
  - 2) 객관지표: 인구, 교육, 주거 및 교통, 문화여가, 안전, 생활환경, 보건복지, 산업·일자리, 생산·분배, 물가·재정 등 10개 부문 44개 지표

〈표 3-1〉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객관지표)

부문	지표 수	지표	
인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증감률</li> <li>• 합계출산율</li> <li>• 고령화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망률</li> <li>• 등록외국인수</li> <li>• 청년층순이동률</li> </ul>
교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서비스권역내 영유아인구 비율</li> <li>•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li> <li>• 인구 만명당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li> </ul>
주거·교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주택비율</li> <li>• 직주근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수송분담률</li> </ul>
문화여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li> <li>• 지자체 예산 중 문화예산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체육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li> </ul>
안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서 접근성</li> <li>•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li> <li>• 지진옥외대피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서 접근성</li> <li>• 119안전센터 1개당 담당주민수</li> </ul>

부문	지표 수	지표	
생활환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보급률</li> <li>• 행정구역면적(1km<sup>2</sup>)당 대기오염물질배출량</li> <li>• 행정구역면적 대비 공원면적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li> <li>•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비율</li> <li>• 주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li> </ul>
보건복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li> <li>•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li> <li>•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비중</li> <li>• 응급의료시설 서비스권역내 인구비율</li> </ul>
산업·일자리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년 사업체수 증감률</li> <li>• 경제활동참가율</li> <li>• 지식기반산업집적도 3개년 평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년 종사자수 증감률</li> <li>• 연구원당 연구개발비</li> <li>• 최근 3개년 창업기업수 증감률</li> </ul>
생산·분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총생산</li> <li>• 지역내 소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무역거래량</li> </ul>
물가·재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물가상승률</li> <li>• 재정자립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가변동률</li> </ul>
총계		44개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gbnCode=S51&eventNo=344>) (검색일: 2025.1.1.)

3) 주관지표: 종합,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안전, 문화·여가, 보건복지, 환경, 시민참여·공동체 등 10개 부문 28개 지표

〈표 3-2〉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 지표 (주관지표)

부문	지표 수	지표	
종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삶의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생활만족도</li> </ul>
주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생활여건</li> </ul>
교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 이용</li> </ul>
산업·일자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창출</li> </ul>
교육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교육의 질</li> <li>• 보육 시설 충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교양 및 취미</li> <li>• 학교 외 교육</li> </ul>
문화·여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 접근편리성</li> <li>•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시설 접근편리성</li> <li>•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li> </ul>
안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li> <li>• 119 신속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안(밤거리 안전)</li> </ul>
환경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악취/폐기물 처리</li> <li>• 공원녹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li> <li>• 대기질(미세먼지 등)</li> </ul>
보건·복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의원/약국 이용</li> <li>• 사회복지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 수준</li> </ul>
시민참여·공동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li> </ul>
총계		28개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gbnCode=S51&eventNo=344>) (검색일: 2025.1.1.)

## 2. 경북연구원 경북 균형발전지표

- 목적: 지역의 경제·사회여건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용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시군별 특색있는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표 구성: 기초역량과 여건, 경제적 성과, 지속가능성, 개인생활, 공동생활, 환경과 에너지 등 6개 부문 38개 지표

〈표 3-3〉 경북연구원 경북 균형발전지표

부문	지표 수	지표	
기초역량과 여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립도</li> <li>• 생산가능인구 증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자주도</li> <li>• 인구증가율</li> </ul>
경제적 성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GRDP</li> <li>• 고용자수</li> <li>• 1인당 GRD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수지</li> <li>• 고용률,</li> <li>• 지역인구 1인당 지역 내 소비금액</li> </ul>
지속가능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비중</li> <li>• 지역설비투자 1억원당 일자리 창출 수</li> <li>• 서비스산업투자 1억원당 외부인구 소비유입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업 비중</li> <li>• 서비스산업투자 1억원당 일자리 창출 수</li> </ul>
개인생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Q-5D</li> <li>• 스트레스 인지율</li> <li>• 자가보유율</li> <li>• 노후택비율</li> <li>• 대학진학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기대수명</li> <li>•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li> <li>• 빈집비율</li> <li>• 초중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li> <li>• 평생교육참여율</li> </ul>
공동생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비율</li> <li>• 독거노인가구비율</li> <li>•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li> <li>•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 명당 혼인 건수</li> <li>•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li> <li>• 유아 천 명당 보육 시설 수</li> <li>• 지역 안전등급</li> </ul>
환경과 에너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li> <li>•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li> <li>• 에너지수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공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li> <li>•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li> </ul>

\*출처: 경북연구원(<http://gb-index.re.kr>) (검색일: 2025.1.1.)

### 3. KDI 지역낙후도지수

-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단계에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일종의 가점을 부여함
  -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
- 지표 구성: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3개 부문 8개 지표

〈표 3-4〉 KDI 지역낙후도지수

부문	지표수	지표	가중치
인구	2	인구증가율	08.9%
		노령화지수	04.4%
경제	3	재정자립도	29.1%
		제조업종사자비율	13.1%
		승용차등록대수	12.4%
기반시설	3	도로율	11.7%
		의사수	06.3%
		도시적토지이용률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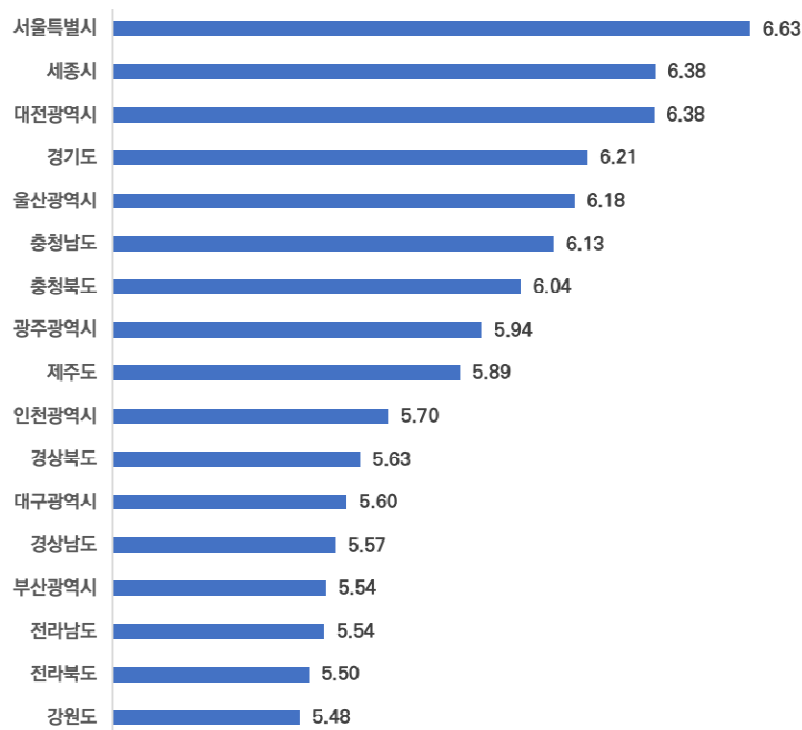
\*출처: 이성재·한국환(2020: 29)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불균형 발전 현황

### 1. 전국 광역자치단체 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정도 측정

- 지방시대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데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하고 있음
- ‘지역발전지수’란 지역의 경제력과 생활여건 등 지역발전을 구성하는 제반요인을 포괄하여, 지역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지칭함
- ‘지역발전지수’는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경제력지수’의 지표: 소득수준, 산업발전정도, 혁신역량, 인력개발, SOC/재정력
  - ‘주민활력지수’의 지표: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
- 2021년 지역발전지수 산정 결과, 전북은 17개 광역자치체 중 16위를 기록하여 발전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 지역발전지수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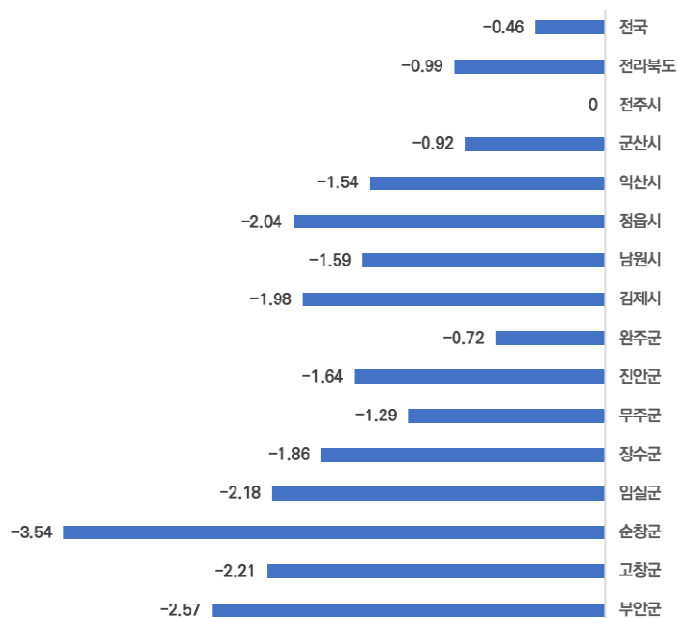
## 2.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간 불균형 현황 분석

- 본 부분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지표’ 중 인구증감률,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노후주택비율,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소방서 접근성, 하수도보급률,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간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고 함

### 1) 인구증감률

- 정의: 최근 40년간 인구 증감소세를 의미하며, 본 지표는 미래의 인구 유입/유출 가능성뿐만 아니라 인구변화의 규모 및 지속성을 가늠케 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0.46과 -0.96로서, 전북 인구증감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인구증감률은 순창(-3.54), 부안(-2.57), 고창(-2.21), 임실(-2.18), 정읍(-2.04)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 인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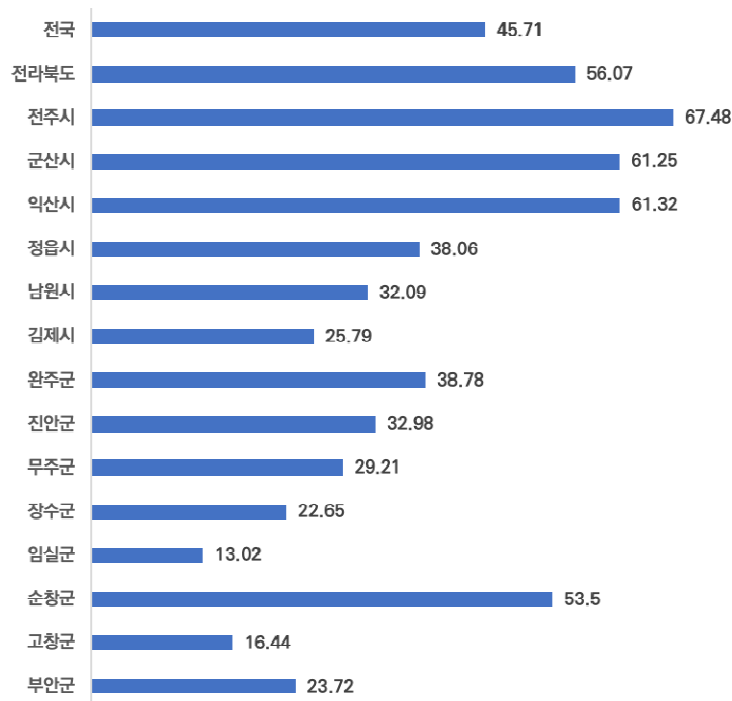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2)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 정의: 초등학교에서 도보이동 10분거리(750m)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본 지표는 주거지역과 초등학교의 근접성을 측정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편의수준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45.71과 56.07로서, 전북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나, 도 내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전주(67.48), 익산(61.32), 군산(61.25) 등이 높은 반면, 임실(13.02), 고창(16.44), 장수(22.65), 부안(23.72)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3〉 초등학교 서비스권역 내 학령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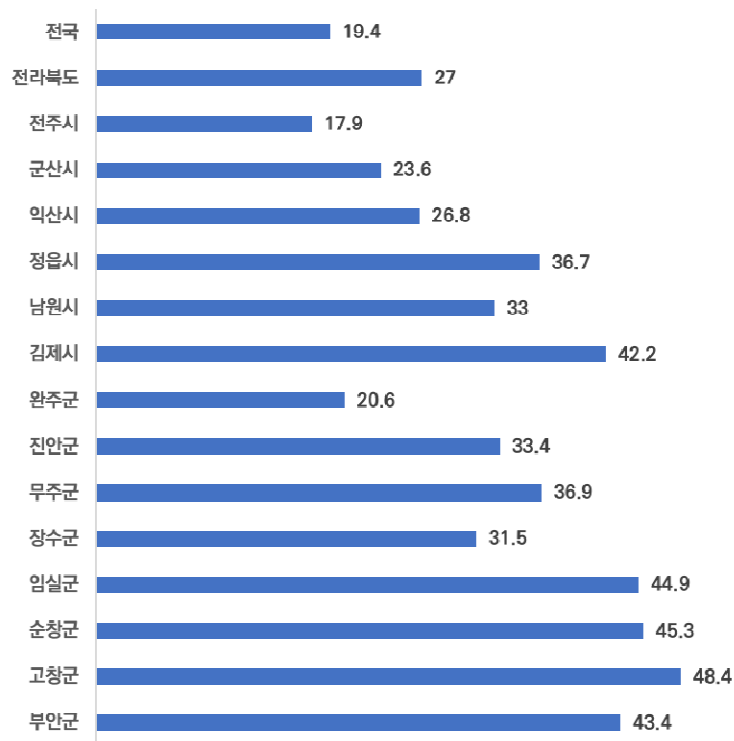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3) 노후주택비율

- 정의: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로서, 본 지표는 노후주택비율이 높으면 주거환경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하여 지역별 일반적 주거환경 수준 파악에 적합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19.4와 27로서, 전북의 노후주택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노후주택비율은 전주(17.9)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고창(48.4), 순창(45.3), 임실(44.9), 부안(43.4), 김제(42.2) 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4〉 노후주택비율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4)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 정의: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도보이동 10분거리(750m)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지역민의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48.25와 56.31로서, 전북의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주(76.78), 군산(61.52) 등이 매우 높은 반면, 임실(18.12), 순창(18.9), 고창(19.22), 완주(19.9) 등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5〉 공공도서관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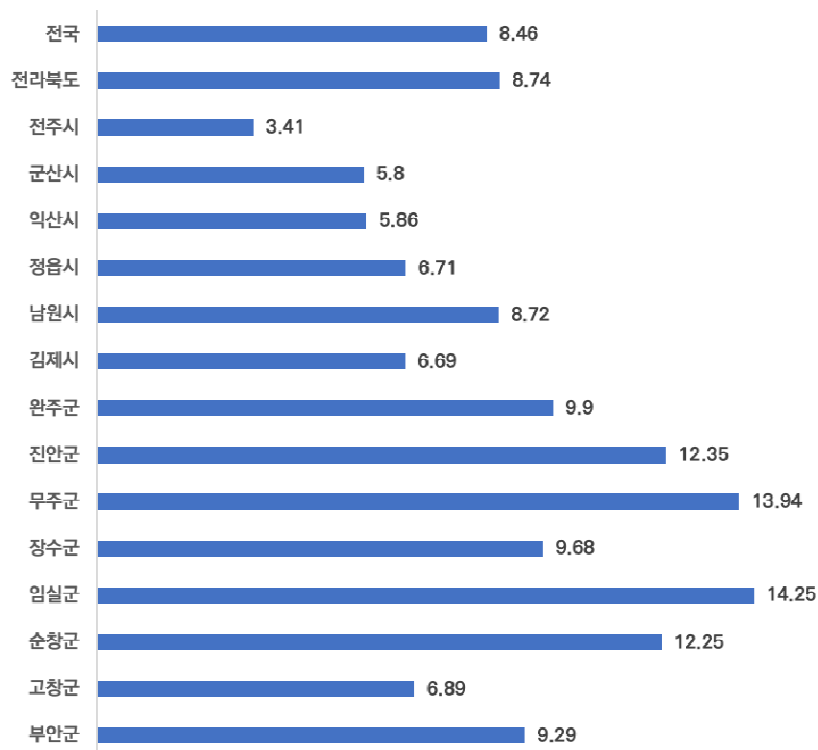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5) 소방서 접근성

- 정의: 가장 가까운 소방서까지의 도로 이동거리를 의미하며, 본 지표는 위급상황 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과 소방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8.46과 8.74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도 내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소방서 접근성은 임실(14.25), 무주(13.94), 진안(12.35), 순창(12.25) 등이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6〉 소방서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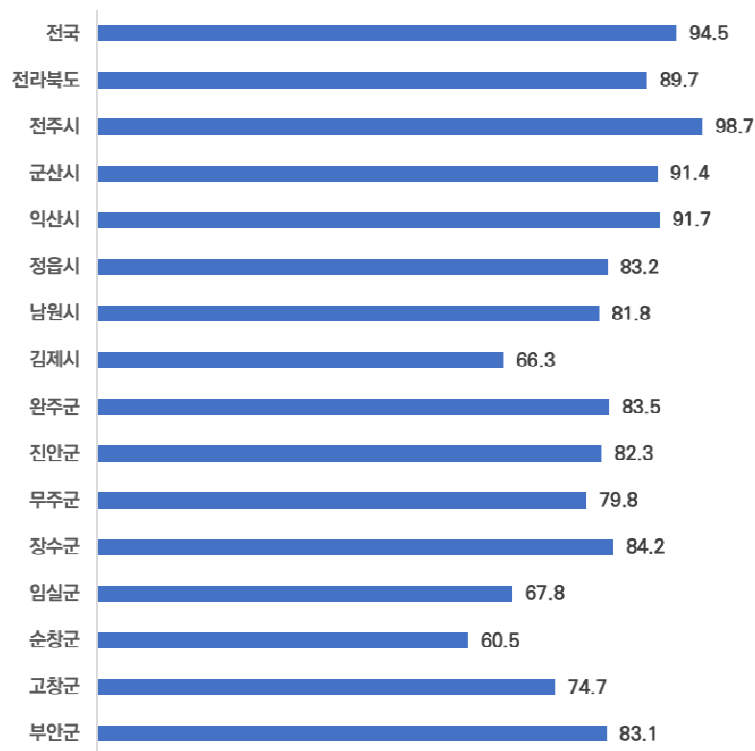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6) 하수도보급률

- 정의: 전체 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의미하며, 본 지표는 지역별 주거환경의 기본적 수준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94.5와 89.7로서, 전북 하수도보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하수도보급률은 순창(60.5), 김제(66.3), 임실(67.8)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7〉 하수도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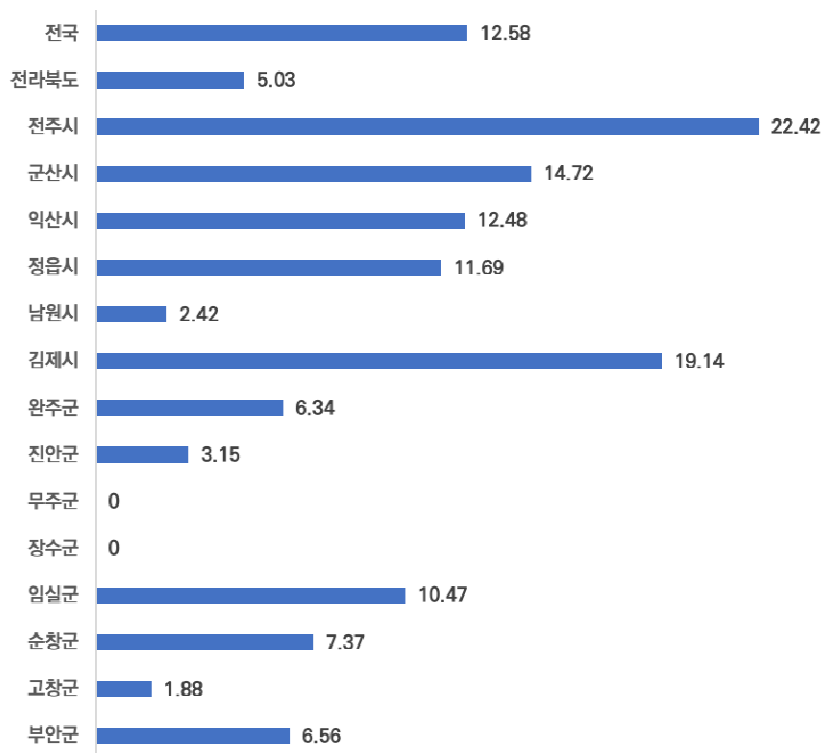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7)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 정의: 병원 시설로부터 도보이동 10분 거리(750m)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본 지표는 병원 서비스 수혜 여부 및 병원시설 공간적 배치의 적절성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12.58과 5.03으로, 전북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은 무주(0), 장수(0), 고창(1.88), 남원(2.42)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8〉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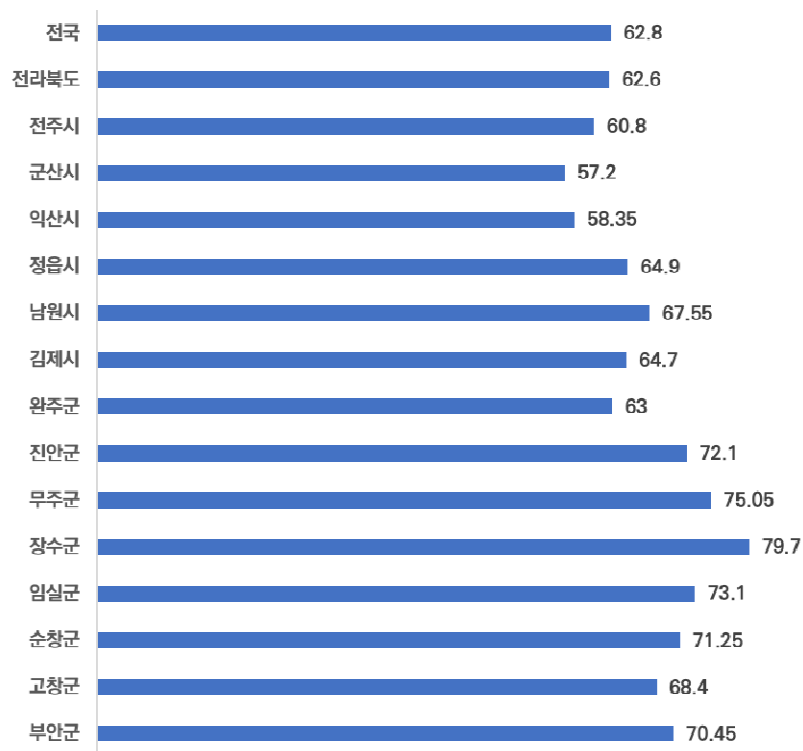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8) 경제활동참가율

- 정의: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본 지표는 인구대비 노동공급 정도를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62.8과 62.6으로서, 전북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전북 내 경제활동참가율은 장수(79.7), 무주(75.05), 임실(73.1) 등이 높은 반면, 군산(57.2), 익산(58.35)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9〉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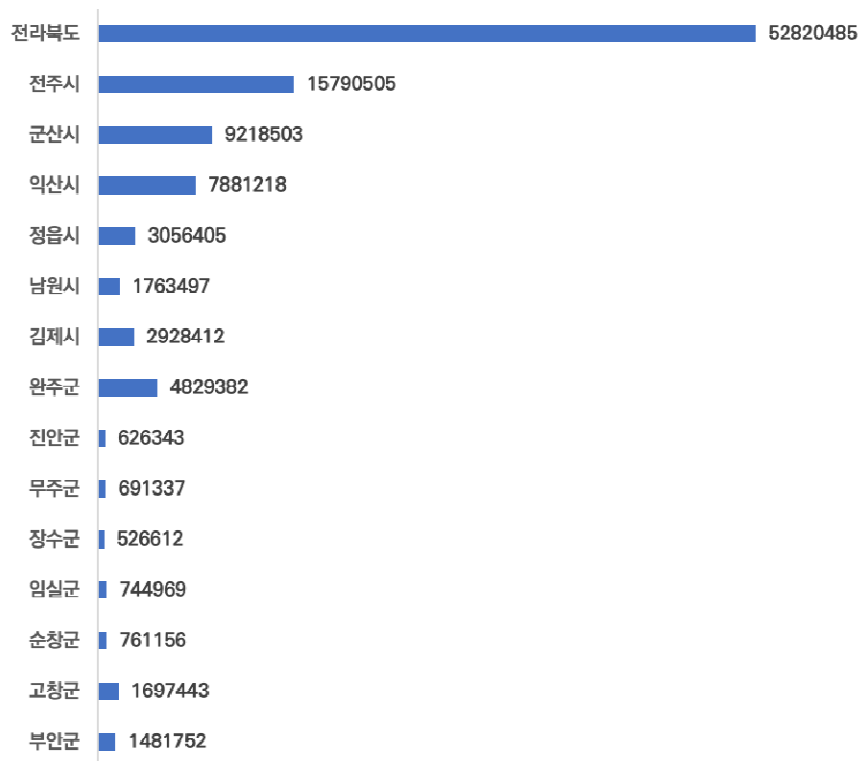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9) 지역내총생산

- 정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지역 내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발생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북 전체 GRDP는 52조 8,204억 원으로 조사됨
  - 전북 내 GRDP는 전주(15조 7,905억 원), 군산(9조 2,185억 원), 익산(7조 8,812억 원)이 높고, 장수(5,266억 원), 진안(6,263억 원), 임실(7,449억 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0〉 지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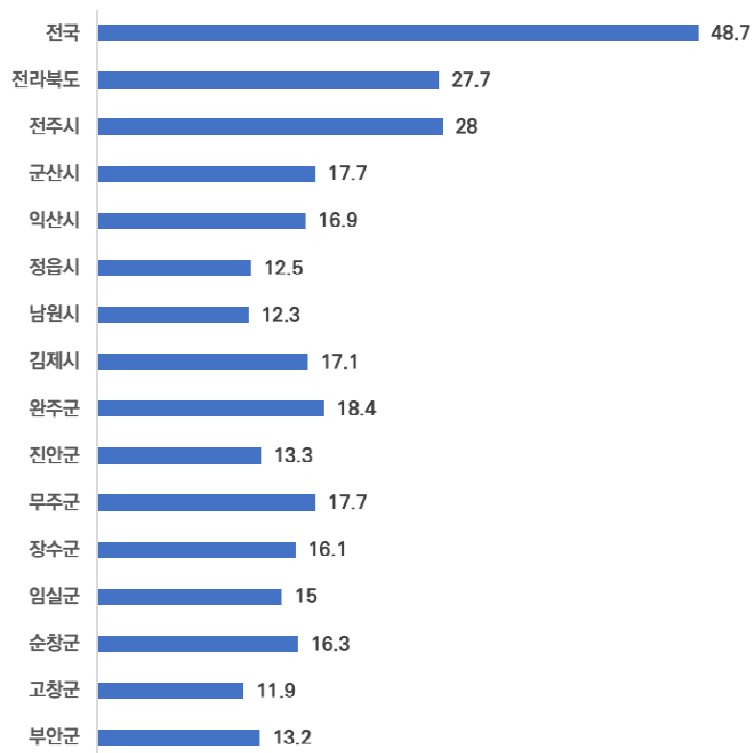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10) 재정자립도

- 정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며, 본 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세입 비율을 통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측정함
- 기초지자체별 산정 결과(2021년 기준)
  - 전국 평균 수치와 전북 평균 수치는 각각 48.7과 27.7로서, 전북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전북 내 재정자립도는 고창(11.9), 남원(12.3), 정읍(12.5), 부안(13.2), 진안(13.3) 등이 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1〉 재정자립도



\*출처: NABIS(<https://www.nabis.go.kr/totalStatisticsDetailView.do?menucd=168&menuFlag=Y>) (검색일: 2025.1.1.)

### 3.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간 불균형 분석결과 함의

#### 1) 불균형 발전의 심각성

- 지역발전지수에 의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정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광역지자체 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발전 격차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인구증감률: 전주와 순창은 각각 0(최고)과 -3.54(최저)를 기록함
  -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 내 학령인구비율: 전주와 임실은 각각 67.48%(최고)와 13.02%(최저)를 기록함
  - 노후주택 비율: 전주와 고창은 각각 17.9%(최저)와 48.4%(최고)를 기록함
  - 소방서 접근성: 전주와 임실은 각각 3.41km(최단거리)와 14.25km(최장거리)를 기록함
  - 하수도보급률: 전주와 순창은 각각 98.7%(최고)와 60.5%(최저)를 기록함
  - 병원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 전주는 22.42%(최고)를, 무주와 장수는 0%(최저)를 기록함
  - 지역내 총생산: 전주와 장수는 각각 15조 7,905억 원(최고)과 5,266억 원(최저)를 기록함
  - 재정자립도: 전주와 고창은 각각 28(최고)과 11.9(최저)를 기록함

#### 2) 일부 도시 중심 불균형 발전 심화

- 전북특별자치도 내 발전은 전주, 익산, 군산 중심으로 편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된 것으로 조사됨
- 전북특별자치도는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동부 지역을 상대적 낙후 지역으로 규정하고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등도 동부권과 유사하게 낙후된 것으로 조사됨
  - 14개 전북 기초지자체 중, 정읍은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에서 각각 10위와

12위를 기록함

- 김제는 '하수도보급률'에서 13위, '노후주택 비율'에서 10위를 기록함
  - 완주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 인구비율'에서 11위를 기록함
  - 고창은 '노후주택 비율'과 '재정자립도'에서 최하위,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내 학령 인구비율'에서 13위, '인구증감률', '공공도서관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 '병원 서비스 권역내 인구비율'에서 12위를 기록함
  - 부안은 '인구증감률'에서 13위, '초등학교 서비스 권역내 학령인구비율', '노후주택 비율', '재정자립도'에서 11위를 기록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동부권 발전사업 외에도 서부지역의 낙후 시·군을 개발하기 위한 발전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계획 및 균형발전정책 비교

#### 1.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계획

- 전라북도 동부권은 서부권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어, 동부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이성재·한국환, 2020; 임인섭 외, 2020)
-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2010년 11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부권 발전사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동부권’의 정의: 전라북도 서부권(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완주, 부안, 고창)에 비해, 발전이 더딘 동부권에 위치한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을 지칭함
  -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균형발전 특별회계(66%)와 도비(34%)의 매칭을 통하여 동부권 발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하도록 함(김재구, 2020)
    - 운영기간 및 재원규모: 2011~2020년(연 3,000억원), 2021~2023년(연 3,600억원)
    - 동부권 6개 시·군의 발전지수 평가 등에 기반하여 재원을 배분함
  - 도지사 직속 ‘동부권발전위원회’의 설치: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동부권 발전사업’은 총 3단계(1단계: 2011-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에 걸쳐 추진됨
  - 동부권 발전계획과 동부권발전 사업의 기간은 다음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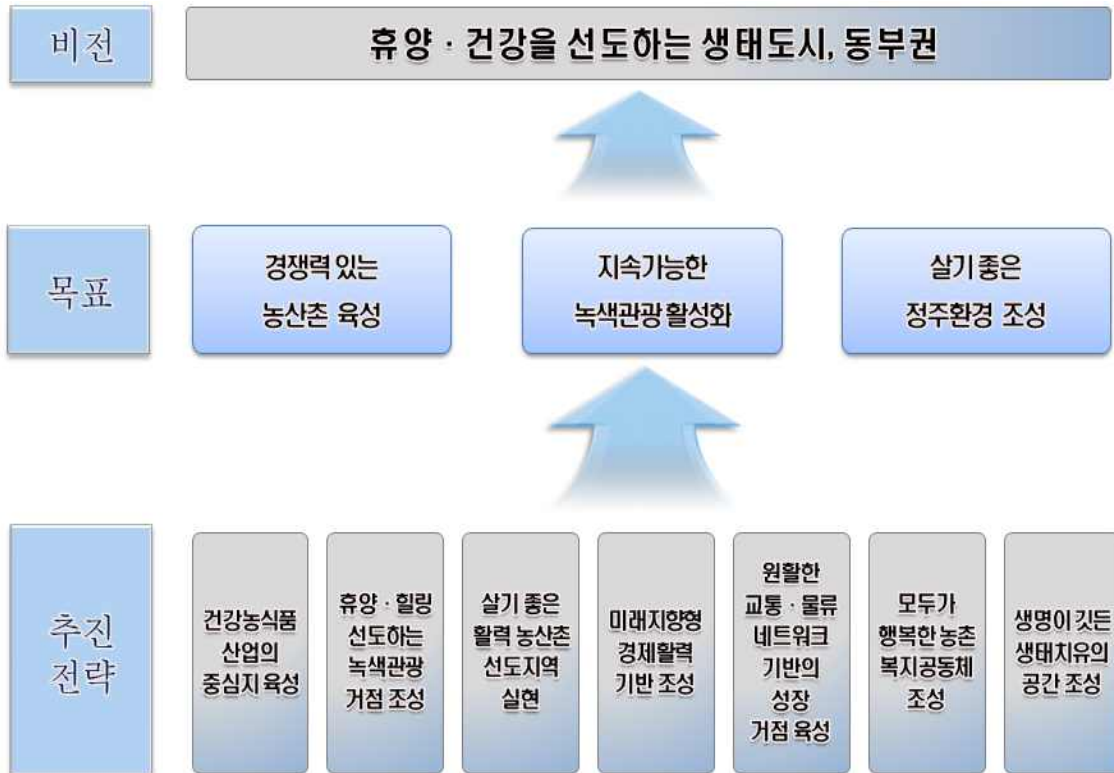
〈표 3-5〉 동부권 발전계획과 발전사업단계의 시기비교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획		1차					2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1)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2012-2016)

- 1단계(2011-2015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은 “휴양·건강을 선도하는 생태도시, 동부권”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음

〈그림 3-12〉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비전·전략체계



\* 출처 :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2~2016), p 41.

- 제1차 동부권 발전계획은 낙후된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명품 휴양·건강을 선도하는 생태도시로 창조하기 위하여 농식품 산업, 관광산업, 농촌개발, 교통·물류 인프라, 지역경제, 농촌복지, 생태환경 등 전 분야에 동부권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특화발전사업을 제외한 7대 부문별 세부사업은 총 49개

〈표 3-6〉 제1차 동부권 발전계획 부문별 세부추진사업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위치	사업기간	주관부처
농식품	FTA 대응 신성장 농산업 창출	신성장 시설원에 농산업 육성	동부권 일원	2013~2016	농림수산식품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동부권 일원	2014~2017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	농식품 6차산업 육성	동부권 일원	2013~2015	전라북도
		소규모 농산가공 창업 지원	동부권 일원	2013~2020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장지향적 농산물유통 시스템 구축	동부권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동부권 일원	2013~2016	전라북도 동부권 공동브랜드 사업단
		발작물 브랜드 및 유통거점화	동부권 일원	2013~2016	농림수산식품부
	로컬푸드 육성 및 산림자원 소득화	동부권 로컬푸드 체계 구축	동부권 일원	2013~2016	전라북도 동부권 로컬푸드 사업단
		고품질 동부권 산채 브랜드화	동부권 일원	2013 ~ 2016	전라북도 동부권 산채사업단
	동부권 식품 특화발전	1시군 1식품 특화발전 사업	동부권 일원	2012년 이후 계속사업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식품 연계 발효산업벨트 육성	동부권 일원	2014~2018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관광	기존 자원 연계를 통한 휴양힐링 거점 조성	에코힐링 콤플렉스 조성	진안군 일원	2014~2018	산림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힐링캠프 조성	무주군 일원	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
		동·식물 매개치유단지 조성	장수군 일원	2014~2018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식약동원(食藥同源) 연수센터 건립	임실군 일원	2014~2018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만성질환 치료센터 건립	순창군 일원	2014~2018	보건복지부
		건강·휴양도시 조성	남원시 일원	2014~2020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생애주기별 산림관광 상품개발	동부권 일원	2013~2016	산림청,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	동부권 농촌관광 활성화	동부권 일원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슬로푸드 관광상품 개발	동부권 일원	2013년 이후 계속사업	동부권 6개 시군
		도보여행 프로그램 도입	동부권 일원예향천리 마실길 구간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자동차전용캠핑장 네트워크 구축		동부권 6개 시군 각 1개소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위치	사업기간	주관부처	
	동부권 관광 특화발전	1시군 1관광 특화발전 사업	동부권 일원	2010~2020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동부권 방문의 해 개최	동부권 일원	2015~2016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동부권 통합 예술축제 개최	동부권 일원	2014~2015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6대 산림치유 패스라인 조성	동부권 6개 시군 각 1개소	2014~2016	산림청,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농촌개발	농산촌 마을 재구조화	농산촌 마을 리모델링	시군별 과소화마을 5개 마을씩	2014~2016	20호 미만의 과소화 마을주민이 결성한 공동체 조직	
	경제활동의 다각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동부권 시군별 2개소	2014~2016	생산자 조직, 지역 농협 등이 참여한 경제사업 조직	
	생활 경제권 재구축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	동부권 시군별 2개소	2013~2016	읍·면단위 슬로시티 추진위원회	
	체계적 지역자원 관리	자원보전관리계약제도	동부권 시군별 5개마을	2014~2016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귀농·귀촌 인력 확보	통합적 귀농·귀촌 시스템 구축	동부권 시군	2014~2016	동부권 6개 시군	
	종합적 농촌인력 확보	지역농업인력종합센터 설립 운영	동부권 시군별 1개소	2014년부터 운영	지역농업인력 종합센터	
지역경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기업지원센터 조성	동부권 일원	2014~2018	지식경제부, 산업단지공단	
		산·학·연 융합센터 설립	동부권 기업지원센터 내	2014~2018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	동부권 기업지원센터 내	2014년 이후 계속사업	고용노동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활력 창출	동부권 1시군 1대표시장 육성	동부권 1시군 1개소	2014~2016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	
		어메니티를 통한 가치 창출	지역 정체성 확립	전라북도 동부권 전역	2014~2018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신활력 캠페인	전라북도 동부권 전역	2014~2015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교통물류	관광 및 농산업 거점 연계 패스라인 구축	동부권 관광농산업 거점 연계 패스라인 구축	동부권 전역	2014~2018	전라북도, 시군청, 국토해양부	
		첨단관광 및 교통정보체계 구축				
	철도 교통물류수송망 확충	전라선 KTX 정치역 증설	전라선 임실역	2014~2018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북도청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위치	사업기간	주관부처
		백두대간 관광철도 건설 추진	남원-무주	2014~2023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복지	총체적 사회적 돌봄 체계 수립	독거노인 돌봄기관 확대	전라북도 동부권 전역	2013~2017	동부권 6개 시군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품질 향상	전라북도 동부권 전역 (매년 2개소 확충)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산	동부권 중 지역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2013~2015	동부권 6개 시군
	복지전달체계 통합화광역화	광역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동부권 중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설치지역 지정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사회복지생활시설 다기능 소규모화	동부권 중 정원 30인 이상 대규모시설 중 소규모 전환 신청시설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현대화	남원의료원, 진안의료원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남원, 장수	2013~2016	동부권 6개 시군
	환경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중심 지역경제순환 공간 창출	주민참여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동부권 주요 생태마을	2014~2015
동부권 에코뮤지엄 조성			동부권 주요 생태마을	2014~2015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주민주도 산림치유마을 조성			동부권 주요 생태치유 마을	2014~2015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생물자원산업 선점을 위한 생태거점 공간 창출		생물자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생물자원 모니터링 사업	동부권 생물자원 모니터링 거점지역	2014~2023	환경부
		생태계 가치증진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 및 관리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일원	2012~2016	환경부
생태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녹색 공간 창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무주-진안-장수 권역, 남원-순창-정읍-고창 권역	2014~	환경부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사업위치	사업기간	주관부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동부권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2014~	저탄소 녹색마을 총괄부처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 출처 :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2~2016), pp 45~48.

## 2)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

- 제2차(2017-2025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덕·섬 벨트 구현”을 비전으로 3대 전략목표, 5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음

〈그림 3-13〉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비전·목표·부문별 전략



\* 출처 :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7~2025), p126.

-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은 낙후된 동부권을 대한민국의 명품 휴양·건강을 선도하는 생태도시로 창조하기 위하여 농식품 산업, 관광산업, 농촌개발, 교통·물류 인프라, 지역경제, 농촌복지, 생태환경 등 전 분야에 동부권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표 3-7〉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 부문별 세부추진사업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농식품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품목 발굴과 생산기반구축	백두대간, 섬진강 등 청정 지역특화자원을 육성, 사업공모 (ex.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동부권 식품클러스터간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특화식품인 '腸 편한 식품개발사업'을 통해 허브(남원), 치즈(임실), 장류(순창) 등 공동 신제품 개발 등 지역 간 연계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해외수출 개척
	식품과 관광·문화·외식 산업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음식, 미용, 산림 휴양, 전통 문화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하여 체류형으로 유도 동부권의 기 구축된 기업·연구소와 관련기관을 집적화하여 암묵적지식의 확산 유도 지역 천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의 공동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지역식품 산업의 외연을 확장
	건강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보완·개선	대사성증후군 치유와 관련한 건강치유마을, 노인성 질환인 치매치료를 위한 마을 등 "농산촌+치유+건강식품" 개념을 지역개발사업에 도입
관광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발굴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대표 관광자원개발
		통합적 관광안내와 장비, 숙박 등과의 체계적 연계 방안 마련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음식·숙박업 등의 수용태세 마련	음식, 미용, 산림 휴양, 전통 문화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연계 사업을 특화하여 음식업·숙박업 등 지역차별성 도모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안형 관광숙박 시설 확충 및 콘텐츠 개발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정비 및 상품화 추진전략 모색	생태 우수지역과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문화 콘텐츠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육성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전국의 야생화 자생군락지를 보전·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야생화 관광상품으로 육성		
농촌체험마을과 전통·건강음식 등 지역자원 연계 및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컨텐츠 확대		
힐링·휴양 및 레저스포츠 관광사업 발굴 검토	(복합리조트)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및 합리적 규제 완화	
	관광열차 이용 활성화와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을 통해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생태문화 콘텐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휴양 힐링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지역에 산재한 생태 관광자원의 보전·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으로 개발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농산촌	노후 주택 리모델링 및 빈집 정비사업 검토	농식품부의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활용
	지역발전위원회의 생활환경 취약지역 주거환경 프로젝트 활용	농어촌 및 도시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추진 활용
	시·군별 차별화된 주택정비 방향 제시	노후주택 개량사업과 빈집정비, 마을 내 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상하·수도 및 전기, 도시가스 등 공급시설 정비
	농산촌지역의 공동체 유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주민주도 마을발전을 지원하는 (도)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농촌의 커뮤니티 형성과 공동체 구축으로 자생적 마을 활성화 지원
농촌 공간의 체계적 정비 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을협의체의 CB사업 실시	
	농촌공동생활공동체 등을 활용, 농산촌 공동체 유지	
경제	특화 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강소농 육성 방안 마련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을 토대로 읍면단위 농촌중심지 보강(ex.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주택의 마을 내 인입유도, 고령임대주택의 중심지 입지 등 농촌마을의 집적화 유도(ex.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생산부터 마케팅까지 가치사슬체계 구축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영농기반의 정비와 확충강화
		지역 농가에서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향토자원으로 지역농촌의 경쟁력
	개별 조직단위로 분산 운영되는 산지유통 시설을 통합마케팅의 종합적 전략에 근거하여 연중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마을공동체 사업조직의 통합적 관리·지원으로
		사업조직으로서의 능력을 증대하고 공동판매 거점 구축
농가 소득증대 전략 및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추진사업 도출	지역 내 다양한 산지유통 주체가 참여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마케팅 전문역량을 강화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지역 내 생산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로컬푸드 생산체계 구축	
	시장변화에 대응력이 강한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으로 생산자 농업인 안심하는 생산도대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역특구, 산업진흥지구 등 지정	지역자원 및 농업 기반과 연계한 식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혁신자원의 공유를 통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융복합화를 통해 지역성장 동력화 추진	
	산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신 시장 개척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복지	최저주거기준 미만의 저소득 고령가구에 농촌 임대주택사업 추진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들 사업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지역별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및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 내 무장애시설의 정부지원 도입	

부 문	추진과제	세부사업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의료복지 개선방안 마련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의 건강상태 및 지역별 복지 인프라를 고려하여 노인돌봄안전망 구축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 정비(ex. 의료취약지역 원격협진시스템 구축)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등 기타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노력	경로당을 활용한 농촌복지전달체계 개선
		(거동능자 대상) 대중교통서비스 지원, 목욕탕비 지원 확대 등 (요부조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 수립	독거노인 돌봄기관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품질 향상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산
	복지전달체계 통합화광역화	광역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생활시설 다기능 소규모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현대화
응급의료기관 육성 및 지원		
환경	주민이 참여하는 생태중심 지역경제순환 공간 창출	주민참여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동부권 에코뮤지엄 조성
		주민주도 산림치유마을 조성
	생물자원산업 선점을 위한 생태거점 공간 창출	생물자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생물자원 모니터링 사업
		생태계 가치증진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 및 관리
	생태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녹색 공간 창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출처 :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7~2025), pp137~158.

### 3) 전라북도 동부권 특화발전사업

- 제1차,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의 동부권 특화발전사업은 1~3단계로 추진되었으며, 단계별 특화발전사업은 다음과 같음

#### (1) 1~2단계 동부권 특화발전사업

- 1단계(2011-2015년)<sup>1)</sup>와 2단계(2016-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은 식품·관광 분야 사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동부권 지역의 특성화를 견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1) 제1차 계획의 기간은 2012~2016, 제2차 계획의 기간은 2017~2025년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어, 현재는 3단계를 추진하고 있음

- 1단계와 2단계 발전사업의 분야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8〉 1-2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구분	시군	1단계(2011-2014년)	2단계(2015-2020년)
식품	남원	• 허브 클러스터('11-'14)	• 허브 클러스터('11-'14)
	임실	• 치즈 클러스터('11-'14)	• 치즈 클러스터('11-'14)
	순창	• 장류 클러스터('11-'14)	•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11-'14) • 월드푸드사이언스관 축('19-'20)
	무주	• 천마 클러스터('11-'14)	• 천마 클러스터('11-'14)
	진안	• 홍삼 클러스터('11-'14)	• 홍삼 클러스터('11-'14)
	장수	• 오미자 클러스터('11-'14)	• 오미자 클러스터('11-'14)
관광	남원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11-'14)	•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15-'20)
	임실	• 사선대관광지('11) • 치즈 팜투어벨트('12-'14)	• 섬진강에코뮤지엄('15-'20)
	순창	• 섬진강향가관광개발('11-'14) • 강천산관광벨리('12-'13)	• 강천산군립공원 개발('15) • 섬진강관광자원개발('16-'18) • 강천산야간명소화사업('17-'18) • 수체험센터 건립('16-'19) • 쉼랜드 관광휴양촌 조성('17-'19)
	무주	• 금강종합레포츠타운('11) • 반딧골산림체험숙박('12-'14)	• 반딧골 산림체험숙박('15-'16) •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17-'19) • 태권도원 주변관광활성화사업('17-'19)
	진안	• 산약초타운조성('11) • 마이산로하스레저타운('12-'13)	• 마이산 북부관광자원구축('14-'16) • 마이산 토탈관광 체험센터('18) •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16-'20)
장수	• 의암공원테마숲('11) • 말산업클러스터('12-'13) • 호스팜랜드조성('14)	• 와룡자연휴양림 관광기반구축('15) • 포니랜드 조성('16-'17) •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18-'20)	

\*출처: 이성재·한국환(2020: 22-23)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 1-2단계 식품 분야 동부권 발전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함

- 남원의 허브, 진안의 홍삼, 무주의 천마, 장수의 오미자, 임실의 치즈, 순창의 장류 등이 해당 지역 대표 식품 브랜드로 성장하였음
- 반면에 관광 분야 동부권 발전사업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2) 3단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은 식품과 관광 분야에서 국한되었던 사업이 ① 포스트코로나19 식품산업 분야 8개 사업, ② 지역특화관광 분야 17개 사업, ③ 문화향유 저변확대 분야 3개 사업, ④ 식품과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ICT 분야 5개 사업 등 총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됨
- 3단계 발전사업의 분야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9〉 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 현황

시군	식품사업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 ICT(식품&관광)
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정비선발 연계 관광지화사업('21~'22)</li> <li>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21~'23)</li> <li>이성계 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21~'22)</li> <li>함파우 아트밸리 조성 사업('23~'25)</li> <li>지리산 허브밸리고도화('21~'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건립사업('21~'23)</li> <li>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21~'22)</li> </ul>	
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기 치즈식품 클러스터 육성('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기 섬진강 에코 뮤지엄 조성('22~'25)</li> <li>요산공원 주변관광 자원화 사업('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 사업('25)</li> </ul>
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고도화사업('21~'25)</li> <li>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20~'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20~'22)</li> <li>경천·양지천 수변종합 개발사업('23~'2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창 休-메디푸드 클러스터('21~'25)</li> </ul>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마플러스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21~'24)</li> <li>안성 칠연지구 관광 자원화 사업('20~'24)</li> <li>무주 남대천주변 경관 조성사업('21~'25)</li> </ul>		

시군	식품사업	지역특화관광	문화향유 저변확대	체류형 ICT(식품&관광)
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 고도화('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사업('21~'24)</li> <li>• 진안·무주 지질공원 관광산업화('22~'25)</li> <li>• 용담호변 관광자원화 사업('21)</li> <li>• 부귀메타세쿼이아길 관광자원화사업('22~'23)</li> <li>•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 사업('2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품홍삼 집적화단지('21~'25)</li> </ul>
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물 육가공시설 개선('22)</li> <li>• 장수 레드푸드융복합 클러스터 사업('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21~'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농업인 유치임대 스마트팜 건립사업('22~'25)</li> <li>•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사업('21~'25)</li> </ul>

### (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단계별 변화

- 동부권 발전계획은 식품과 관광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되 다른 5개 부문(농촌 개발, 지역경제, 교통, 복지, 환경)도 개발·육성하여 동부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었음
- 특히, 제2차 제3단계 발전사업에는 특화사업을 식품과 관광분야에서 문화향유 저변 확대 및 체류형 ICT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음

## 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

- 현재 2025년 이후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나, 전북연구원이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중 균형발전 특화 전략을 추출하여 작성한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음

### 1) 전북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 전략

- 5권 특화발전 전략
  - 전북특별자치도를 5개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발전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그림 3-14〉 전북특별자치도 5권 특화 전략

구분	목표	전략
<b>중추혁신도시권</b>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상생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소재 및 농생명산업 고도화</li> <li>◦ 전통·생활문화 확산</li> <li>◦ 성장거점 연계 발전</li> </ul>
<b>서남권</b>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서해안 문명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농수산물식품산업 육성</li> <li>◦ 해양·역사문화 경제 선도</li> <li>◦ 서해안 연계교통망 구축</li> </ul>
<b>동북권</b>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강소지역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식품산업 강화</li> <li>◦ 경제·복지 산림 육성</li> <li>◦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확대</li> </ul>
<b>동남권</b>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건강·생태 유토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케어산업 특화</li> <li>◦ 산수 생태 거점</li> </ul>
<b>새만금권</b>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	동북아 경제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신산업 요람</li> <li>◦ 해양관광 진흥</li> <li>◦ 글로벌 SOC 확충</li> </ul>

\* 출처 : 이성재·한국환(2020).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 전북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58.

〈그림 3-15〉 전북특별자치도 5권 특화 전략 맵



○ 발전축 구상(3×3 격자형 발전축)

- 발전축은 5개 권역의 목표와 전략을 고려하고, 권역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능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음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5개 권역 연계를 위한 3×3 격자형 발전축 구상

유형	축	권역	전략	사업
대외 지향형	혁신 성장축	중추 도시권, 서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 및 미생물 R&amp;D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육종, 방사선육종 등 종자산업의 Seed Valley 거점</li> </ul> </li> <li>• 전북 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 완주, 정읍 중심의 전북연구 개발특구의 기능 및 지원체계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연구개발특구</li> <li>• 국제금융센터</li> <li>• 수소국가산단 및 탄소 국가산단</li> <li>• 홀로그램산업 클러스터</li> <li>• 호남권 첨단의료복합 단지</li> </ul>
	생태 문명축	중추 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거점 확산 및 연계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추혁신도시권과 새만금권간 탄소, 수소산업, 지능형 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연계 강화</li> </ul> </li> <li>• 농·생명산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 농기계, 가공, 수출 등과 관련된 농생명산업 고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수소클러스터 및 RE100산단</li> <l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li> <li>• 하이퍼루프 실증단지</li> <li>•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li> <li>•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 마을</li> </ul>

유형	축	권역	전략	사업
연계 협력형	해양 레저축	새만금권, 서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벌, 섬, 해수욕장 등 해양·해안 생태환경 관광 상품화</li> </ul> </li> <li>• 해양 레저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및 해안자원 활용, 자연친화형 친수어메니티기능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새만금수목원</li> <li>•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li> <li>• 스마트 바다목장</li> <li>• 아쿠아 디지털 트윈</li> </ul>
	백두 대간 힐링축	동북권, 동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 휴양·힐링 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권 산림치유원을 거점으로 인접 지역의 산림·휴양시설의 기능적 연계, 힐링거점으로 특화</li> </ul> </li> <li>• 산림 문화·레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문화, 숲 문화 등 산림문화 콘텐츠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li> <li>• 태권시티</li> <li>• 지리산 국립산림교육 문화센터</li> <li>• 자원순환 목재산업 클러스터</li> </ul>
	북부 생태 연계축	중추 도시권, 새만금권, 동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강 생태 관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경강 유역 지자체 연계, 생태환경 복원·보전, 생태관광 활성화</li> </ul> </li> <li>• 금강 레저·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 상류 데미샘, 옥정호 등 생태자원 관광기능 확충, 수상레저기반 확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제역사유적지구</li> <li>• 사회적경제 혁신타운</li> <li>•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li> <li>• 만경강 생태관광지</li> </ul>
	남부 생태 연계축	동남권, 서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헬스케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자원 및 시설에 기반한 인력양성, R&amp;D 강화, 연관산업 등</li> </ul> </li> <li>• 생태 힐링 거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산, 옥정호, 섬진강, 내장산, 문수산, 갯벌 등 생태 힐링 거점 조성 및 네트워크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li> <li>•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li> <li>•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li> <li>• 섬진강 르네상스</li> </ul>

〈그림 3-16〉 전북특별자치도 5권 연계 3×3 격자형 발전축



## 2) 전북특별자치도 내 균형발전 전략과 개별 시·군 발전전략 비교

### ○ 분석시 제외하는 시·군 및 이유

- 기존 동부권(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의 경우 동부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2차 계획에는 동부권 6개 시·군별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본 연구의 비교대상에서 제외
- 또한, 중추도시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역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전주, 완주, 익산도 제외함

### ○ 분석대상 시·군은 새만금권(군산, 김제), 서남권(정읍, 고창, 부안)에 해당함

### (1) 서남권 균형발전전략과 정읍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비교

#### ○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 정읍시는 4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표 3-11〉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4대 핵심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전략	기본구상	세부 내용	
서남권 중심으로서 “성장하는 도시”	첨단산업 기반 확보 및 전통산업의 고도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 및 인프라 확보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정읍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의 연구시설과 정읍 RFT 첨단과학산업단지과 연계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북연구특화단지등 신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공간 및 산업적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정읍시 산업체계의 고도화 및 발전 도모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 조성	권역별 특화 및 연계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적인 관광거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내장산 (내장산리조트), 산내(옥정호)중심의 관광거점 구축	내장산과 인접하여 내장산 리조트, 축산 테마파크,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
					옥정호의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구절초 테마파크등 관광 인프라, 고택 및 서원, 선비문화체험관 등 전통문화 체험 관광 거점 조성
			인접한 변산반도(부안), 새만금, 순창, 임실, 담양 등과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구축	4대권역(동학농민혁명유적지권, 태산선비문화권, 정읍사 문화권, 내장산국립공원권)의 특화 및 통합연계	역사문화·교육(동학농민혁명유적지권), 전통문화체험과 치유·힐링 관광(태산 선비문화권), 전통예술(정읍사 문화권), 레저·자연·종합(내장산국립공원권) 등 특성을 활용한 권역별 발전 및 연계
				정읍시 순환도로, 특화가로 조성 등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자원 통합상품화 및 연계 구상	
모두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도시”	분야간 협력 및 주변 도시와의 연계 체계 구축	도시 네트워크 통한 도시권 형성	광역교통체계	KTX개통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새만금연결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지역간 연결교통망의 개선	
				정읍만의 특별한 “매력있는 도시”	자연경관의 복원 및 정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적 여건 조성	역사적 특성에 기반한 도시공간 구조의 정비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관리 및 정비체계 구축	역사문화자원 발굴, 정비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생태경관 보호	자연경관의 복원 및 정비	자연경관보전 및 복원, 정비체계 구축	내장산 및 옥정호 주변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경관에 대한 복원 및 정비체계 구축		

4대 핵심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전략	기본구상	세부 내용
미래를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보존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 구축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체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국가 시범사업 등과 연계한 저탄소 녹색 마을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활성화 및 저탄소 환경 조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태양광 등)의 활성화

\* 출처: 2030년 정읍도시기본계획(2016)

○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내 정읍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12〉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 내 정읍 대상 사업

분야	사업명	비고
혁신성장	농생명첨단부품소재 국가산단 조성	정읍
	천연물 기반 바이오 소재산업 거점 조성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설립	
	헬륨이용 의료용 소형가속기 구축	
	복합미생물산업화 기반 구축	
	해외생물종 대체지원센터 구축	
	구절초 테마공원 국가정원 조성	
상생도약	스마트 축산 ICT 시범 사업	정읍, 임실, 순창, 남원
지속가능 발전	VR·AR 동학농민혁명 체험역사관	
상생도약	새만금물류교통망 동부내륙국도	

○ 정읍의 도시기본계획과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을 비교하면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관련 사업과, 광역교통체계 관련 사업은 비교적 잘반영되어 있음(〈표 3-11〉과 〈표 3-12〉의 파란색)
- 반면, 관광거점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한 상황임(〈표 3-11〉과 〈표 3-12〉의 빨간색)

## (2) 새만금권 균형발전전략과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의 비교

○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 군산시는 첨단산업경제도시, 내륙과 해양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물류 거점도시, 해양 문화관광도시 등을 주요 개발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3-13〉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내 주요 개발사업

목표	추진전략	기본방향	세부내용
지역균형발전 및 활력을 유도하는 첨단산업경제 도시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재생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산단 업종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li> </ul>
	2. ICT융합센터 구축을 통해 신산업및 혁신 기반 마련	첨단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용차 부품업체 등의 업종전환 유도 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전기·수소차혁신 클러스터 조성</li> <li>• 캠퍼스 혁신 파크 추진</li> </ul>
	3. 새만금과 연계된 신재생 에너지 기반 구축		
내륙과 해양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물류 거점도시	6. 새만금및 인근지역과의 광역 교통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 익산 등 광역적 광역교통축 연계 거점으로 복합 물류거점 조성</li> </ul>
	7. 익산~대야철도, 새만금국제 공항 및 신항만과 연계체계 구축		
	8. 동서첨단복합물류거점 육성	새만금신항및 산업단지와 연계된 교통망 및 물류거점 조성	
추억과 설레임으로 감성충만한 해양문화관광 도시	10. 복합해양생태문화 등 테마 관광권역 설정	테마관광권역 설정 및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테마관광권역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군산군도및 항만 계획과 연계한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li> <li>- 금란도 항만재개발과 마리나 항만(비응, 고군산) 조성 및 인프라 구축</li> </ul> </li> </ul>
	11. 관광자원간 연계 강화 및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지역별 관광인프라 확보를 통한 체류형 관광기반 마련	
	12.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및 관광기능 육성	그린투어리즘을 활용한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	

○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내 군산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3-14〉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 내 군산 대상 사업

분야	사업명	비고
혁신성장	AI 기반 상용차 자율주행 연구기반 구축	군산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 고도화	
	개야도항국가어항 개발	
	새만금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새만금항인입철도건설	
	금란도 항만친수시설개발	
지속가능 발전	국립 환황해권해양박물관	군산
	농·건설기계 재제조산업 생태계 구축	
상생도약	한중 문명교류원	군산, 새만금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익산, 군산

○ 군산의 도시기본계획과 균형발전 5권 특화전략을 비교하면

- 전기차·수소차 혁신클러스터 구축관련 사업, 항만재개발·해양레저관광 관련된 사업, 광역교통체계 관련 사업 등이 잘 반영되어 있음(〈표 3-13〉와 〈표 3-14〉의 파란색)

### 3.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과 서남권, 새만금권 기초자치단체 간 발전전략 비교결과 시사점

○ 분석 대상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5개권역으로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이중 3개 권역을 제외하고 분석
  - 중추혁신도시권(전주, 익산, 완주)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동북권(진안, 무주, 장수), 동남권(남원, 임실, 순창)을 제외하고, 지역균형 발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산업, 관광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

- 분석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발전계획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하향식 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대체로 각 기초단체의 주요과제와 연계되어 있으나, 다만, 주요과제 들이 전북도가 수립한 장기발전계획 내 사업이며, 각 기초단체에서 주요과제로 제시되지 않은 사업들이 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 기초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계획수립 시기에 차이로 정밀한 비교분석 곤란, 기초단체의 계획 내 우선순위 구별이 어려워 균형발전정책 반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기존의 하향식 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상향식 균형발전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제4장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 및 조직체계 사례분석

- 본 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균형발전 관련 조례 및 균형발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조직체계를 사례분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대상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수준 도(道)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도(道)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조례 및 조직체계를 사례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은 특별시 1개(서울), 광역시 6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특별자치시 1개(세종), 도 6개(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특별자치도 3개(강원, 전북, 제주) 등 총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음
  - 광역 수준 시(市)(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광역 수준 도(道)(도, 특별자치도)는 면적, 행정구역, 담당 사무, 행·재정적 권한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함

### 제1절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 1. 광역 도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 총 9개 광역 수준 도(道) 중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한 8개가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조문별로 사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1〉 광역 도 균형발전 조례 비교표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정의)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 및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경쟁력을 강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 및 경쟁력 강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 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발전 역량을 증진 및 경쟁력 강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
지원대상지역(정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선정된 시·군	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	저발전지역: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 발전도를 조사하여 선정된 시·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선정된 시·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선정된 시·군		시·군별 발전도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하는 지역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선정하는 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정의)	지역발전 견인 신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필요 사업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및 지역경쟁력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가 저발전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	지원대상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추진 되는 사업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대상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추진 되는 사업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가 선정한 지원대상지역 및 지역별·권역별 개발 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추진 되는 사업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사업 -지역균형발전지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도지사 책무	종합적 시책을 수립·추진, 필요 예산 확보 및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종합적 시책을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 강구 -시·군은 도의 종합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추진 및 필요시 인근 시·군과 협력을 통해 권역별 발전방안 강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 -시·군은 도의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 사업에 적극 협력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 정책을 적극 개발·추진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응해 행정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조치 마련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	예산 확보, 종합적 시책의 수립·추진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 -행정시·읍·면·동에 대하여 도의 종합적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행정시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권역별 발전 방안도 마련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지역 선정 주기	도안의 모든 시·군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 선정	각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도내 각 시·군별 지역 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5년마다 저발전 지역을 선정	도내 시·군의 지역 발전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 균형 발전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 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			4개 권역별 지역 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 발전지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5년마다 지원지역을 선정
지원대상 지역 선정 기준	1.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뒤떨어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5.접경지역 시·군 6.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 7.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1.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1.지방재정 기반의 취약성 및 소득수준 정도 2.고령화의 심각성 정도 3.주민 취업 기반의 미비성 정도 4.사회기반시설의 낙후 정도 5.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	1.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 정도가 심하여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1.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정기간 인구의 감소 또는 정체, 고령화 정도 2.주민의 취업기반 미약 여부 3.산업 활동기반의 취약 및 소득수준 정도 4.사회기반시설의 취약 및 뒤떨어짐 정도 5.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 수립 주기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
기본계획 수립 기준	1.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2.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권역별 개발계획 4.그 밖에 지역균형	1.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1.저발전지역의 균형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의 기본 방향 2.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권역별	1.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그 밖에 지역균형	1.경상북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과제의 추진 등에	1.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2.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1.지역균형발전 기본 방향 2.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4개 권역별 균형 발전방안 및 추진 계획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발계획 4.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사람) 문화·관광, 복지 나. (공간) 농산어촌, 지역개발, 환경 다. (산업) 지역산업 라. 시·군 간 상생협력 마. 투자재원의 조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 조사·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 및 시설 배치				공공기관 신설 또는 이전시 기관 기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 -기반시설 등 확충에 있어 도민들이 편익 및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				공공기관 신설 또는 이전시 기관 기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배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공원 등을 신설 또는 확충시 시민들이 편익과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별 권역별 개발 계획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 지역을 연계한 지역별·권역별 개발 계획 중장기 수립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치는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단위 사업으로 추진 -중복투자를 억제하고 통일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 가능	
시행 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 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수립시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수립시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사업투자협약제 운영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발전사업차보고	도지사는 매년 지역 균형발전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최초 정례회 개최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의회에 제출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 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라남도의회에 제출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최 전까지 의회에 제출	
지역발전사업가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주변 여건 변화 및 변경 관련 법규 등 변경 사항을 다음 해 시행계획 반영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주변 여건 변화 및 변경 관련 법규 등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지역균형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와 관련 법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해의 시행 계획에 반영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합평가 및 컨설팅 가능 -종합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사업 추진 우수 행정시 등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공고 및 주민견담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정·변경시는 제주 특별자치도보와 제주 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시 등에 관계 서류 사본 송부 -관계 서류를 받은 행정시장 등은 이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정·공고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설치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지역균형발전위원회설치	지역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지원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필요시 정책 제시 또는 도지사 자문에 응할 수 있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3.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운영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선정·변경·고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선정·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지원단운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 지원단은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조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에 부처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3.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 5.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합복합 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6.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협력, 조사·연구 및 업무 지원 7.그 밖에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시책 지원과 위원회 지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 가능 1.도내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 등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 2.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3.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4.그 밖에 도시사가 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연구기관에 지역발전연구센터 설치·운영 가능 -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 가능 -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출처: 연구진 작성

## 2.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 사례분석 결과

### 1) '지역균형발전' 정의

○ 관련 정의는 8개 광역 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충청남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2) '지원대상지역' 정의

○ 관련 정의는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북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지역균형발전사업' 정의

○ 지원균형발전사업 정의는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북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4) 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 책무 규정은 8개 자치도 중 6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5) 지원대상지역 선정 주기

- 지원대상지역 선정 주기는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6)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

-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은 8개 자치도 중 5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해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7) 기본계획 수립 주기

-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8개 자치도 모두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8) 기본계획 수립 기준

-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8개 자치도 모두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9) 공공시설 및 시설 분산 배치

- 공공시설 및 시설 분산 배치는 8개 자치도 중 2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10)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은 8개 자치도 중 3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11)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은 8개 자치도 중 6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10)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는 8개 자치도 중 1개 도만이 포함함

- 충청북도만 포함함

#### 11)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보고

○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보고는 8개 자치도 모두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12)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는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북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13) 사업 지정공고와 주민의견 수렴

○ 사업 지정공고와 주민 의견 수렴은 8개 자치도 중 1개 도만이 포함함

- 제주특별자치도만 포함함

### 14)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 설치는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북도는 포함하지 않음

### 15)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8개 자치도 중 7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경상남도는 포함하지 않음

### 16) 위원회 지원단 운영

○ 위원회 지원단 운영은 8개 자치도 중 1개 도만이 포함하고 있음

- 경상북도만 포함함

### 17)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는 8개 자치도 중 3개 도가 포함하고 있음

-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함

-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함하지 않음

## 제2절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관련 조직 사례분석

- 총 9개 광역 수준 도(道)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비교 전북특별자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예정
- 분석기준은 조직체계 및 인력,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함

### 1. 전북특별자치도

#### 1) 조직체계

- 전북특별자치도는 1팀을 두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획조정실 소속의 정책기획관을 두고 정책기획관 소속의 균형발전팀을 두고 있음

〈그림 4-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2)</sup>

2)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표 4-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 기능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 기획조정</li> <li>• 국가균형발전 정책대응 및 업무추진</li> <li>• 자치분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li> <li>•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li> <li>• 전북특별자치도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li> <li>•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li> <li>• 동부권 발전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 수립, 평가,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관리</li> <li>• 중부내륙권 발전조합계획 대응</li> <li>• 서해안권내륙권백두권 발전계획 및 협의체 대응</li> <li>• 지역균형발전 성과평가</li> </ul>

### 3) 인력

○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21명임<sup>3)</sup>

〈표 4-3〉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6	전문연구원 포함
계		6	

## 2.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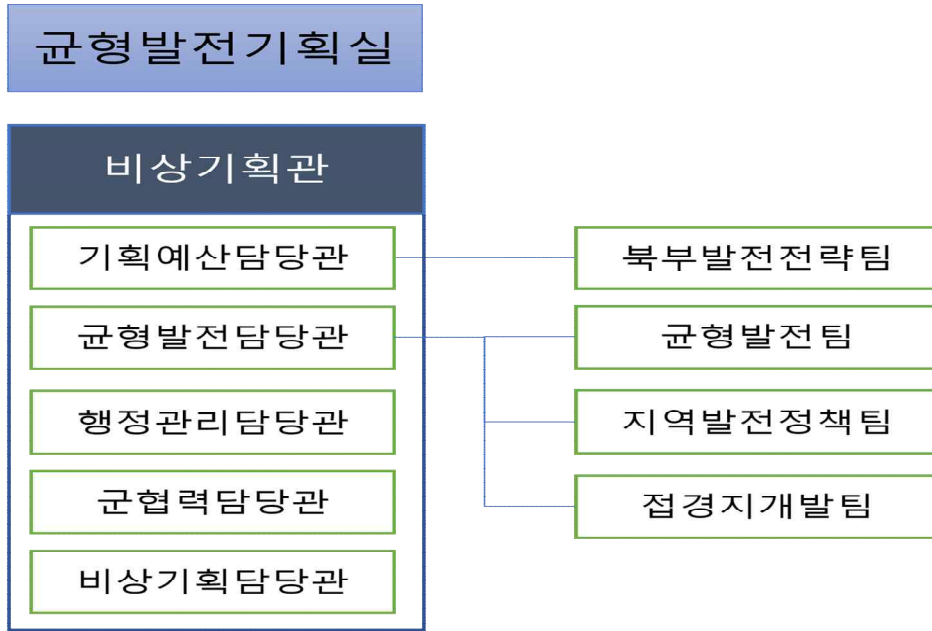
### 1) 조직체계

○ 경기도는 1과 4팀(북부발전전략팀 포함)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 소속의 균형발전기획실을 두고 실 소속의 균형발전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균형발전담당관과는 별개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에 북부발전전략팀을 두고 있음
  - 행정 2부지사는 경기북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제2청사에 위치하고 있음
  - 따라서 균형발전은 경기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됨

3)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그림 4-2〉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4)</sup>

〈표 4-4〉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기획예산담당관	북부발전전략팀	• 경기북부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발전정책팀	• 경기도 발전계획 수립 • 국가 균특회계사업 관리 • 균형발전·지역혁신관련 정책연구 추진
	접경지개발팀	•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 사업 및 지원 •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

## 3) 인력

- 경기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21명임<sup>5)</sup>

4)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5) 경기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표 4-5〉 경기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기획예산담당관	북부발전전략팀	3	과장, 공무원 1명 포함
균형발전담당관	균형발전팀	6	
	지역발전정책팀	6	
	접경지개발팀	6	
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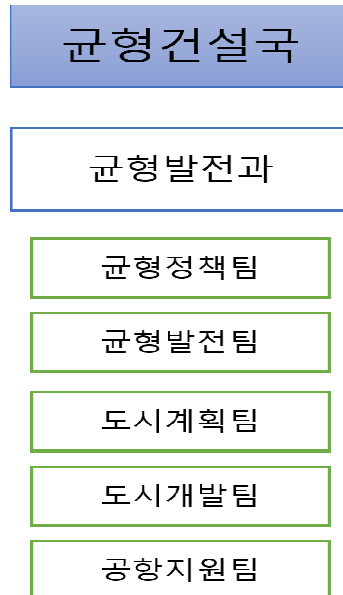
### 3. 충청북도

#### 1) 조직체계

○ 충청북도는 1과 5팀을 두고 있음

- 균형건설국을 두고 국 소속의 균형발전과를 두고 있음
  - 균형발전과 도로·교통철도 기능을 같은 국에 배치하여 계획수립과 인프라구축을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4-3〉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6)</sup>

〈표 4-6〉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개발사업</li> <li>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li> </ul>
	균형발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수용위원회</li> <li>내륙권 발전사업, 행복마을 사업</li> </ul>
	도시계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li> <li>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li> <li>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법령</li> </ul>
	도시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택지개발촉진법 관련 업무</li> <li>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li> <li>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li> <li>개발제한구역, 공여구역 관리</li> <li>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공동구 시설관리</li> </ul>
	공항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주국제공항</li> <li>공항개발 및 항공정책, 공항시설 확충</li> <li>청주국제공항 홍보, 재난, 통계</li> </ul>

## 3) 인력

○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28명임<sup>7)</sup>

〈표 4-7〉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	9	과장, 공무원 1명 포함
	균형발전팀	4	
	도시계획팀	6	
	도시개발팀	5	
	공항지원팀	4	
계		28	

6)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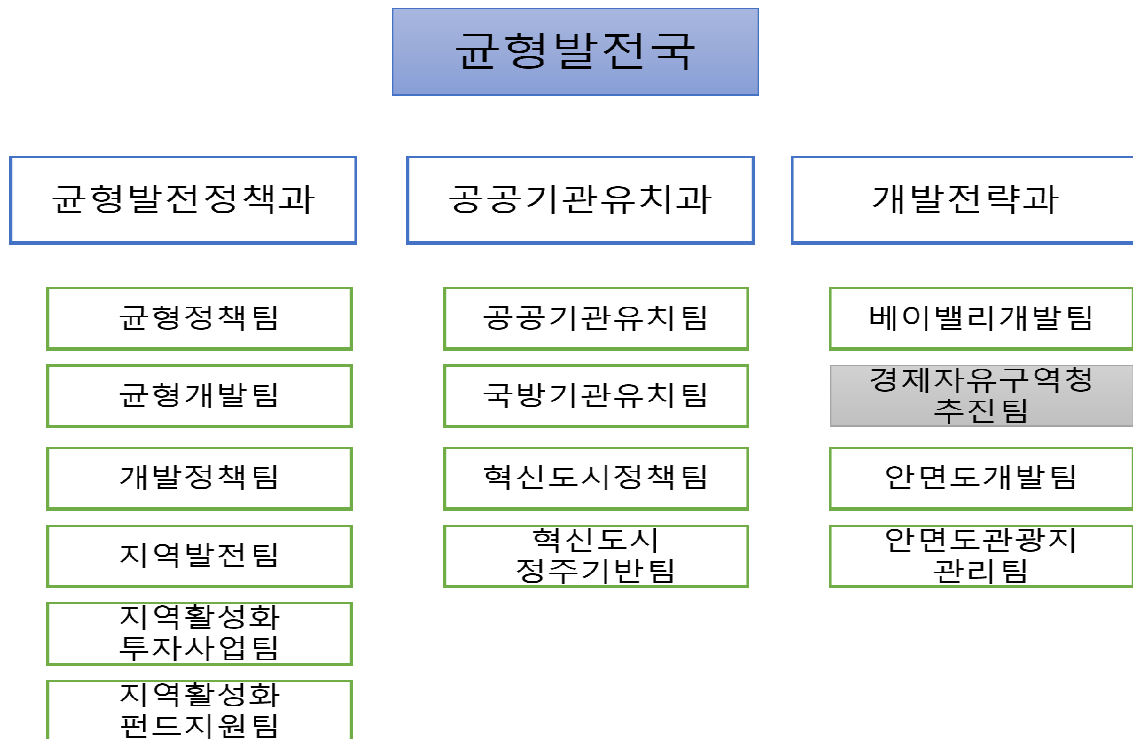
7)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 4. 충청남도

##### 1) 조직체계

- 충청남도는 1국 3과 14팀을 두고 있음
  - 균형발전국을 두고 국 소속의 3과(균형발전정책과, 공공기관유치과, 개발전략과)를 두고 있음
  - 충청남도는 균형발전 기능과 더불어 공공기관유치 및 주요 지역개발사업을 동일한 국에 배치하였음

〈그림 4-4〉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8)</sup>

〈표 4-8〉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가능발전 업무</li> <li>환황해 포럼 업무</li> <li>균형발전분과 도민평가단 및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관리</li> <li>양극화 해소 관련 업무</li> </ul>
	균형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 수립</li> <li>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운영</li> <li>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li> <li>생활SOC 복합화 사업</li> </ul>
	개발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종합계획 및 도 종합계획 업무</li> <li>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li> <li>지역개발관련 도 장기발전 구상</li> <li>충청권 메가시티(초광역 협력) 구축 지원</li> <li>충청남도 명품가도 조성 및 관광도로 관리계획 수립</li> <li>충남 권역별 발전전략사업 추진현황관리</li> <li>지역개발 관련 도 장기발전 구상 및 주요과제 수행</li> <li>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li> <li>충남-전북간 상생발전전략 수립</li> </ul>
	지역발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개발계획(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및 사업추진</li> <li>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관리</li> <li>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li> <li>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li> <li>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li> </ul>
	지역활성화 투자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지원</li> <li>프로젝트 컨설팅(사업성 검토, 기재부 매칭)</li> <li>SPC 설립지원 및 조례제정</li> <li>지역상생형 순환도시 사업 추진·지원</li> <li>지역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li> </ul>
	지역활성화 펀드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추진·지원</li> <li>시군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li> <li>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홍보 등</li> </ul>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유치팀

8)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과	팀	주요기능
	국방기관유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방기관 유치 정책기획, 전략 수립·시행</li> <li>국방 관련 공공기관·단체 유치 추진</li> <li>육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이전 추진 및 지원사업 추진</li> <li>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 추진</li> <li>제2중앙경찰학교 공모</li> </ul>
	혁신도시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포신도시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관리·운영</li> <li>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설</li> <li>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지원</li> </ul>
	혁신도시 정주기반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도시정주기반 구축</li> <li>혁신도시정주기반팀 업무 기획조정 총괄</li> <li>홍예공원 명품화 및 도민 참여숲 조성 총괄</li> <li>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영향평가</li> <li>내포신도시 가로수 및 녹지에 관한 업무</li> <li>스마트시티 조성 등 기반 구축</li> <li>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li> <li>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업무</li> </ul>
개발전략과	베이밸리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이밸리 핵심사업 추진·관리</li> <li>베이밸리 홍보</li> <li>베이밸리 특별법 제정추진</li> <li>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li> </ul>
	경제자유구역청 추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자유구역 계획 수립 및 지정</li> <li>경제자유구역 개정에 관한 사항</li> </ul>
	안면도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면도 관광지 개발, 투자유치, 공모추진</li> </ul>
	안면도관광지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면도 관광지 관리</li> </ul>

### 3) 인력

○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57명임<sup>9)</sup>

〈표 4-9〉 충청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	7	과장, 공무원 1명 포함
	균형개발팀	3	
	개발정책팀	3	
	지역발전팀	3	
	지역활성화 투자사업팀	3	
	지역활성화 펀드지원팀	3	

9)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공공기관유치과	공공기관유치팀	6	과장 포함
	국방기관유치팀	3	
	혁신도시정책팀	4	
	혁신도시 정주기반팀	6	
개발전략과	베이벨리개발팀	6	과장 포함
	경제자유구역청 추진팀	3	
	안면도개발팀	4	
	안면도관광지관리팀	3	
계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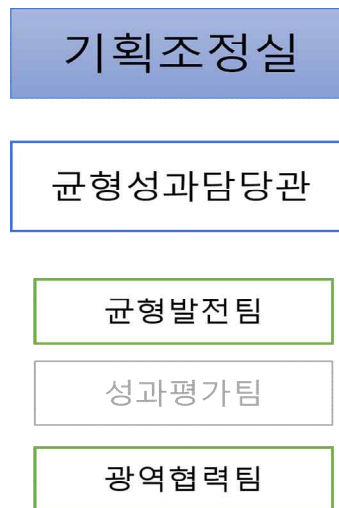
## 5. 전라남도

### 1) 조직체계

○ 전라남도는 1과 2팀을 두고 있음

- 기획조정실 소속 하에 균형성과담당관에 2팀(균형발전팀, 광역협력팀)을 두고 있음
  -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계획과 총괄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5〉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10)</sup>

〈표 4-10〉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균형성과담담당관	균형발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협력</li> <li>• 기획발전특구</li> <li>•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방시대계획 수립·추진</li> <li>•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추진</li>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li> <li>•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li> <li>• 균형발전사업 발굴·추진</li> <li>• 균형발전 연구용역, 연구·조사·분석, 지속가능·균형발전 사업</li> <li>•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균형발전사업 컨설팅 지원</li> <li>• 지역자율계정 평가·관리</li> <li>• 초광역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li> </ul>
	광역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광주, 남해안권, 경남, 호남권·경북, 서울경기 등 타시도 상생협력 및 광역행정협의회</li> <li>•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li> <li>•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li> <li>• 동서교류 협력재단 관리</li> <li>•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건설</li> </ul>

## 3) 인력

○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10명임<sup>11)</sup>

〈표 4-11〉 전라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균형성과담담당관	균형발전팀	7	과장, 전문위원 2명 포함
	광역협력팀	3	
계		10	

10)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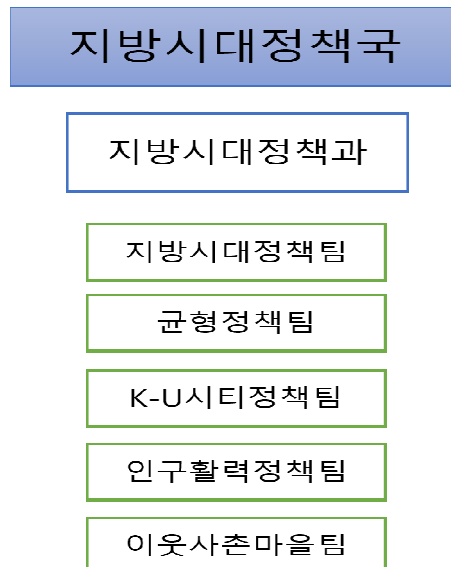
11)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 6. 경상북도

### 1) 조직체계

- 경상북도는 1과 5팀을 두고 있음
  - 지방시대정책국을 두고 국 소속의 지방시대정책과, 5팀(지방시대정책팀, 균형정책팀, K-U시티정책팀, 인구활력정책팀, 이웃사촌팀)을 두고 있음
    - 균형발전과 청년지원, 지방소멸대응 기능을 한과에 배치
    - 균형발전기능과 인구정책 기능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계획하고 있음

〈그림 4-6〉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12)</sup>

〈표 4-12〉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지방시대정책과	지방시대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지원</li> <li>•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지원</li> <li>•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li> <li>• 대구경북행정통합 기획 및 절차 추진</li> <li>• 지속가능발전(SDGs)</li> <li>• 경북 로컬체인지업 사업</li> </ul>
	균형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기획·발굴 및 추진</li> <li>• 공공기관이전 대응 및 유치전략 수립</li> <li>• 지방이양 추진 및 과제 발굴 등 지방분권</li> <li>• 지역혁신체계 예산 관리</li> <li>• 국토외곽면섬 및 경계지역 계획수립·지원</li> <li>• 지방시대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li> <li>• 대구경북초광역권발전계획</li> </ul>
	K-U시티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U시티 추진계획 수립</li> <li>• 청년정주 4대 정주여건 패키지 추진</li> <li>• K-U시티 연구지원센터 조성</li> <li>•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운영</li> <li>• 대학-전문대-고교 인력양성체계 추진</li> </ul>
	인구활력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계획 수립 및 (광역·기초)성과관리</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컨설팅 및 지원</li> <li>• 광역-기초 기금 연계사업 운영 및 관리</li> <li>•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li> <li>•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 지원</li> <li>• 생활인구 관련업무 추진</li> <li>•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li> <li>• 생활SOC 지원사업</li> <li>•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li> </ul>
	이웃사촌마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사촌마을 조성 특별위원회</li> <li>• 이웃사촌시범마을 추진</li> <li>• 경북 로컬체인지업 사업</li> </ul>

12)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 3) 인력

○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23명임<sup>13)</sup>

〈표 4-13〉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정책팀	8	과장 포함
	균형정책팀	5	선임연구원 1명 포함
	K-U시티정책팀	3	
	인구활력정책팀	4	
	이웃사촌마을팀	3	육아휴직 2명 제외
계		23	

## 7. 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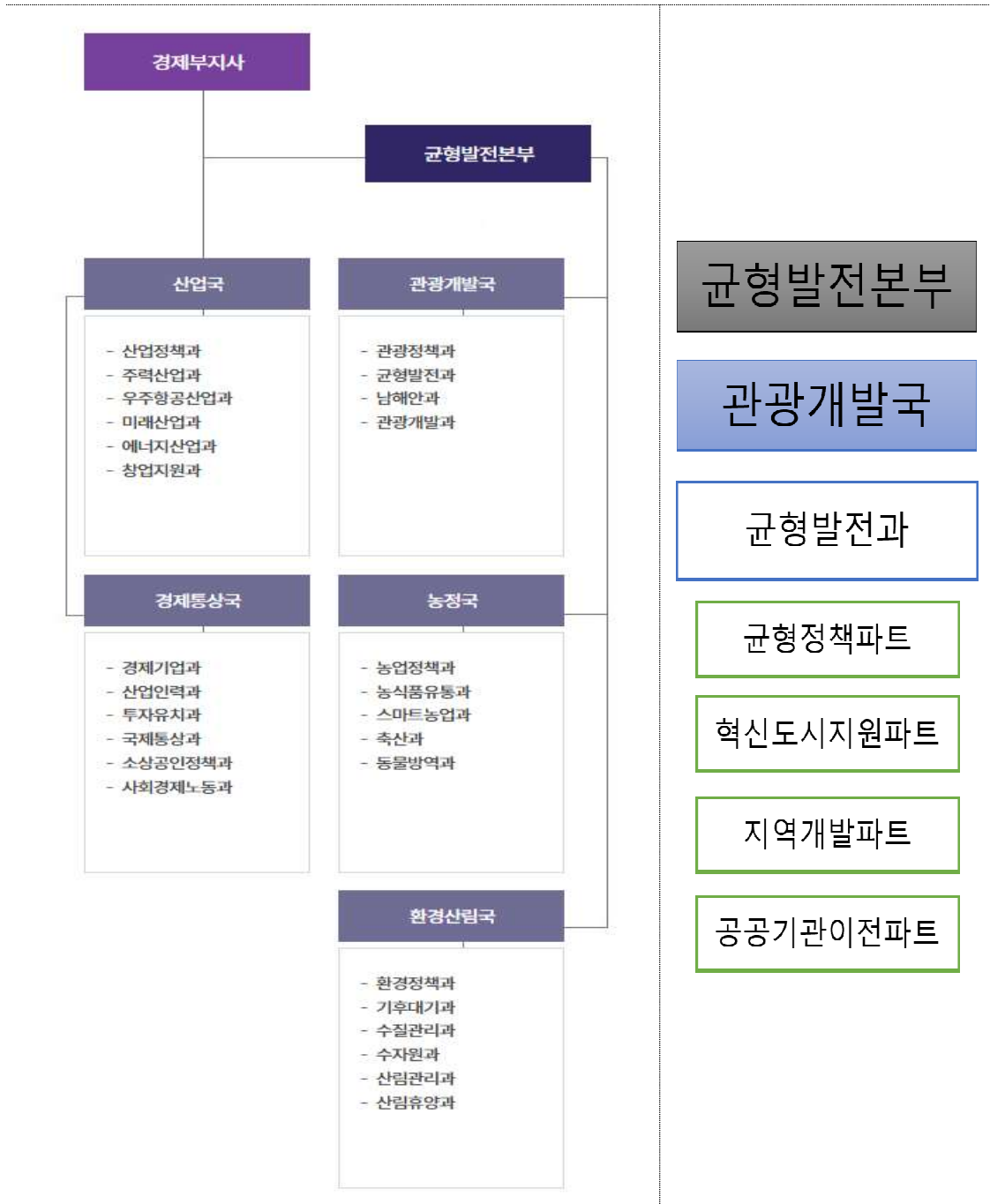
### 1) 조직체계

○ 경상북도는 1과 4파트를 두고 있음

- 경제부지사 소속 균형발전본부장을 두고 관광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을 관할하게 하고 있음
- 관광개발국을 두고 국 소속의 균형발전과, 4파트(균형정책파트, 혁신도시지원파트, 지역개발파트, 공공기관이전파트)를 두고 있음

13)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그림 4-7〉 경상남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14)</sup>

〈표 4-14〉 경상북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li> <li>• 남해안권 발전발전 종합계획</li> <li>• 백두대간 발전종합계획 추진·관리</li> <li>•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li> <li>•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li> <li>•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li> </ul>
	혁신도시지원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원</li> <li>•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 설립·운영</li> <li>• 경상남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운영</li> <li>•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수립·시행, 지역인재 육성·확대</li> <li>•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인·허가 및 활성화</li> </ul>
	지역개발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전신도심 개발사업</li> <li>•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 집행 관리·평가</li> <li>•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리·지원</li> <li>•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추진</li> <li>• 주민참여예산 사업</li> <li>•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검토</li> </ul>
	공공기관이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공공기관 2차이전 지원</li> <li>• 인재개발원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지원</li> <li>• 이전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관리</li> <li>• 지방 이양사무, 특례사무관련 업무</li> <li>•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관련 업무</li> <li>• 자치분권 활성화 시책 추진</li> </ul>

14)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 3) 인력

○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16명임<sup>15)</sup>

〈표 4-15〉 경상남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파트	6	과장, 연구원 1명 포함
	혁신도시지원파트	3	
	지역개발파트	4	
	공공기관이전파트	3	교육대상 1명 포함
계		16	

## 8. 강원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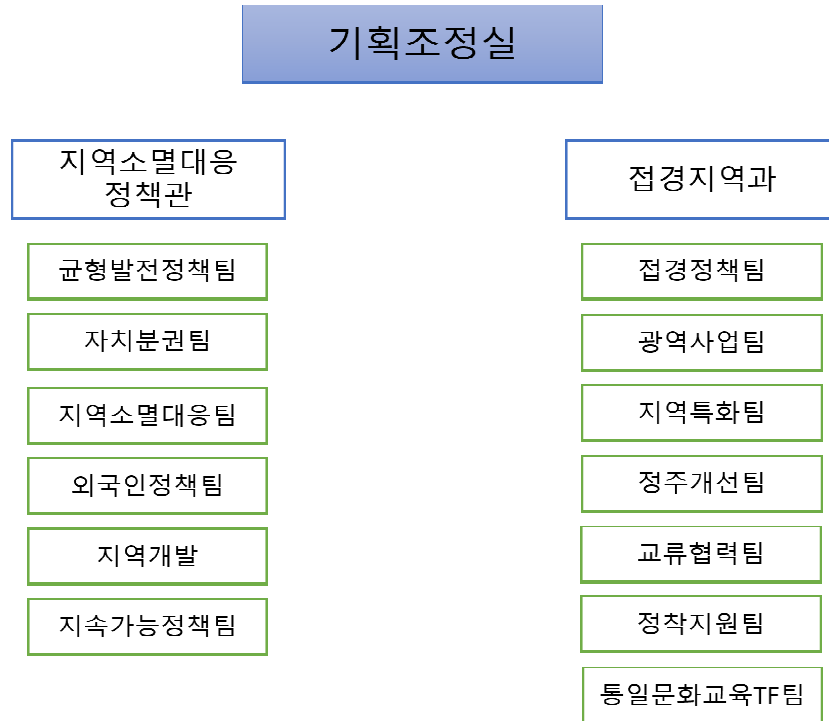
### 1) 조직체계

○ 강원특별자치도는 2과 12팀을 두고 있음

- 기획조정실을 두고 국 소속의 2과(지역소멸대응담당관, 접경지역과)를 두고 있음
  - 지역소멸대응담당관내 6팀(균형발전정책팀, 자치분권팀, 지역소멸대응팀, 외국인정책팀, 지역개발팀, 지속가능정책팀)을 두고 있으며,
  - 접경지역과내 6팀 1TF팀(접경지역정책팀, 광역사업팀, 지역특화팀, 정주개선팀, 교류협력팀, 정착지원팀, 통일문화교육 TF팀)을 두고 있음

15)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그림 4-8〉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16)</sup>

〈표 4-16〉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균형발전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운영</li> <li>•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입안 및 조정·관리</li> <li>•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 지원</li> <li>•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관리, 시범사업 추진 및 지표관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운영</li> <li>• 동해안권 및 중부내륙권 포럼 운영</li> </ul>
	자치분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추진</li> <li>•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도/시군 기능 배분</li> <li>• 강원도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li> </ul>

16)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과	팀	주요기능
	지역소멸대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li> <li>•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운용·관리</li> <li>•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li> <li>• 인구감소지역 투자(펀드)사업 총괄</li> <li>•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특례관한 사항</li> <li>• 인구감소지역 공모(기금) 사업</li> </ul>
	외국인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관리</li> <li>• 외국인 유입·정책 제도개선 및 사업발굴</li> <li>• 외국인력 유치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li> <li>• 사업통합정책 및 사회통합교육 운영·지원</li> <li>• 도내 외국인현황 데이터 관리</li> </ul>
	지역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계획수립, 지역개발 및 지원</li> <li>•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인허가 의제협의회 구성·운영</li> <li>•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li> <li>• 거점육성형,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li> <li>•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li> <li>• 도경계 환경정비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li> </ul>
	지속가능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li> <li>•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시책발굴</li> <li>•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과제 관리 및 점검</li> </ul>
접경지역과	접경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군사규제개선 추진</li> <li>•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성화 추진</li> <li>• 강원·경기 접경지역 군관협력 추진</li> <li>•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특례발굴 및 관리</li> <li>• 군부대 이전 추진</li> <li>• 군사규제 완화</li> <li>•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li> </ul>
	광역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관리</li> <li>•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li> <li>•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관리</li> </ul>
	지역특화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li> <li>• DMZ 평화의 길 및 평화누리길 활성화, 세계평화공원 조성</li> <li>• 접경지역 관광자원조성 및 활성화 추진</li> <li>•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추진</li> </ul>
	정주개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지원 종합계획 수립·추진</li> <li>• 접경지역 시설 및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li> <li>- 접경지역 상권활성화</li> <li>- 접경지역 대표먹거리 개발·육성 지원</li> <li>- 접경지역 농어촌민박 활성화</li> </ul> </li> <li>• 접경지역 경관 및 시가지 환경개선</li> <li>• 접경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li> </ul>

과	팀	주요기능
	교류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플러스센터 조직 구성 추진</li> <li>•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계획 수립, 홍보 추진</li> <li>• 접경지역 경제특구 관련 사업 발굴지원</li> <li>•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기금 편성·및 운용</li> <li>•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육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li> </ul>
	정착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li> <li>• 북한이탈주민 강원도 지역협의회 운영</li> <li>• 북한이탈주민 사군 지역협의회 지원</li> <l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군 보조사업 추진</li> <li>•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직원 및 도민 대상)</li> <li>•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활동 지원</li> </ul>

### 3) 인력

○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53명임<sup>17)</sup>

〈표 4-17〉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지역소멸대응담당관	균형발전정책팀	8	과장, 선임연구원 2명 포함
	자치분권팀	3	
	지역소멸대응팀	5	
	외국인정책팀	4	
	지역개발팀	4	
	지속가능정책팀	2	
접경지역과	접경정책팀	9	과장, 통일플러스센터장, 접경지역협력관, 군관협력전문관 포함
	광역사업팀	3	
	지역특화팀	3	
	정주개선팀	3	
	교류협력팀	3	과장 포함
	정착지원팀	4	
	통일문화교육TF팀	2	
계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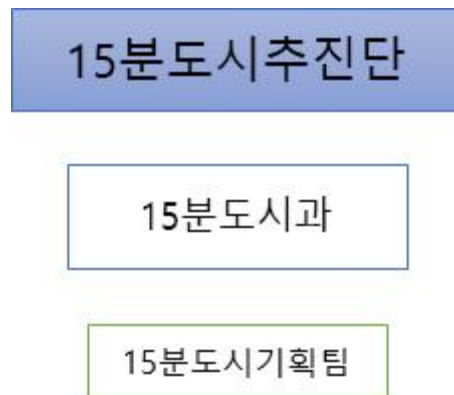
17)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 9. 제주특별자치도

### 1) 조직체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1과 1팀을 두고 있음
  - 15분도시 추진단을 두고 추진단 소속의 15분도시과, 1팀(15분도시 기획팀)을 두고 있음

〈그림 4-9〉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체계



### 2) 기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sup>18)</sup>

〈표 4-18〉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조직의 기능

과	팀	주요기능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 지역균형발전사업기본·시행계획 수립</li><li>• 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총괄</li><li>•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운영관리</li><li>•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li></ul>

### 3) 인력

-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관련 인력은 총 1명임<sup>19)</sup>

18)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19)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참고

〈표 4-19〉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관련 인력현황

과	팀	인력수(명)	비고
15분도시과	15분도시기획팀	1	균형발전업무는 팀내 1명이 수행
계		잘못된 계산식	

## 10.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체계 종합 및 시사점

### 1) 조직·인력 체계

○ 광역 도의 균형발전 조직·인력은 다음과 같음

〈표 4-20〉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 및 인력 종합

광역 도	조직	인력수(명)	비고
전북특별자치도	1팀	6	•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관 내 1개팀
경기도	1과 4팀	21	• 행정2부지사 소속 • 균형발전담당관과 별개로 기획예산담당관 내 경기도 내 북부만을 대상으로 북부발전전략팀을 두고 있음
충청북도	1과 5팀	28	• 균형건설국 소속
충청남도	1국 3과 14팀	57	• 균형발전기능을 국단위로 운영 • 공공기관유치 기능과 도지사 공약 중 개별사업(예: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면도 개발관리) 기능을 두고 있음
전라남도	1과 2팀	10	• 기획조정실 소속 • 균형성과담당관으로 균형발전외 성과평가 기능 포함되어 있음
경상북도	1과 5팀	23	• 지방시대정책국 소속 • 인구정책(지방인구소멸 대응 기능)과 청년지원 기능(K-U시티) 기능의 연계를 통하여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음
경상남도	1과 4파트	16	• 경제부지사 하, 균형발전본부장을 두고, 관광개발국 내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2과 12팀	53	• 기획조정실 소속 • 지역소멸대응과에서 인구소멸과 균형발전 기능을 수행 • 접경지역과를 두어 지역 내 일정지역만 지원하는 과를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1과 1팀	1	• 팀내 1명이 균형발전기능을 담당

## 2) 조직인력 시사점

- 광역 도의 균형발전 조직의 배치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4-21〉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배치 시사점

기획조정실 소속	사업부서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특별자치도</li> <li>• 경기도</li> <li>• 전라남도</li> <li>• 강원특별자치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북도</li> <li>• 충청남도</li> <li>• 경상북도</li> <li>• 경상남도</li> <li>• 제주특별자치도</li> </ul>
<p><b>기획조정실 내 배치하는 경우</b> - 정책·기획·조정의 총괄기능 중심</p>	<p><b>사업부서 내 배치하는 경우</b> - 정책·기획·조정에 더하여 사업수행도 같이 실시</p>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관 내 1개 팀 6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타 광역 도는 과 단위로 운영하며, 충청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단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균형발전국을 두고 있으며, 균형발전, 공공기관유치, 개발전략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기능 1팀 6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역으로 균형발전업무 수행이 타 광역 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낮고,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따라서 타 광역 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조직과 인력의 강화를 통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균형발전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3) 기능 시사점

- 타 광역 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조직의 핵심 수행기능을 도출할 수 있음

- 타 광역 도의 균형발전 조직에서 핵심기능으로 ① 지역균형 정책, ②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 ③ 특정지역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사업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및 혁신도시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22〉 광역 도 균형발전 조직의 기능 종합

시도	실·국	과	지역균형 정책	지역발전	공공기관 등 유치 및 혁신도시	지역투자유치	특정사업	인구, 외국인 등	기타
전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 담당관					북부발전전략팀		
		균형발전 담당관	균형발전팀	지역발전팀			접경지개발팀		
충북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 균형발전팀	도시개발팀			공항지원팀		도시계획
충남	균형발전국	균형발전 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균형개발팀,	개발정책팀, 지역발전팀		지역활성화 투자사업팀, 지역활성화 펀드지원팀			
		공공기관 유치과			공공기관유치팀, 국방기관유치팀, 혁신도시정책팀, 혁신도시 정주기반팀				
		개발전략과					베이벨리개발팀, 경제자유구역청 추진팀, 안면도개발팀, 안면도관광지 관리팀		
전남	기획조정실	균형성과 담당관	균형발전팀, 광역협력팀						

시도	실·국	과	지역균형 정책	지역발전	공공기관 등 유치 및 혁신도시	지역투자유치	특정사업	인구, 외국인 등	기타
경북	지방시대정책국	지방시대정책과	균형정책팀, 지속가능발전팀	지속가능발전팀			K-U시티정책팀	인구활력팀 이웃사촌마을팀	
경남	균형발전 본부 下 관광개발국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파트	지역개발파트	공공기관이전파트, 혁신도시지원파트				
강원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정책팀, 지속가능정책팀	지역개발팀				외국인정책팀, 지역소멸대응팀	
		접경지역과					접경정책팀, 광역사업팀, 지역특화팀	정주개선팀, 교류협력팀, 정착지원팀	

## 제5장 광역자치단체 균형발전 조례안 및 조직체계 제안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내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용할 조례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는 것에 있음

### 제1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는 2010년 11월 도(道)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지역(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동부권 발전사업을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함
- 하지만, 제4장(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불균형 현황 분석)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동부권 6개 지역뿐만 아니라 서부권에 위치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 등도 유사하게 낙후된 것은 파악됨.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형평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서부권 낙후지역 대상 발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함
- 전주, 익산, 군산이 도(道)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발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들 지역마저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에 비하면 상대적 발전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동부권 6개 지역뿐만 아니라, 나머지 8개 지역을 포함한 ‘통합형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체계적이고 형평성이 있게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함
-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제정에는 실패함
- 본 절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정본을 제시하고자 함

〈표 5-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본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 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 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의 지역 간 <b>발전 격차</b>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북 자치도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란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 수준이 <b>현저하게</b> 저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b>구조적으로</b> 불리한 환경에 있어 특별한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전북자치도 내 시·군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li> <li>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b>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b>으로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li> </ol>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군의 지역 간 <b>상대적 발전 격차</b>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북 자치도 전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란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 수준이 <b>상대적으로</b> 저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b>상대적으로</b> 불리한 환경에 있어 특별한 배려 또는 지원이 필요한 전북자치도 내 시·군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지역을 말한다.</li> <li>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b>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b>으로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추가)</b> 발전 격차는 절대적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 의미임을 명시함</li> <li>• <b>(변경)</b>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의 모든 시·군은 생활환경 및 사회 기반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지역의 정의로는 부적합함. 따라서 ‘현저하게’와 ‘구조적으로’를 ‘상대적으로’로 변경함</li> <li>• <b>(삭제)</b> ‘획기적으로’는 주관적이고 측정불가능한 표현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b>제3조(도지사의 책무)</b>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p>	<p><b>제3조(도지사의 책무)</b> 도지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p>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b>제4조(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b>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자치도 내의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내 주민의 취업 등 경제활동 기반 및 소득수준</li> <li>2.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li> <li><b>3. 인구감소·정체 또는 고령화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b></li> <li><b>4.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곤란한 정도</b></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4조(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선정)</b>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자치도 내의 모든 시·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내 주민의 취업 등 경제활동 기반 및 소득수준</li> <li>2. 지역의 지방재정 여건</li> <li><b>3. 인구감소·정체 또는 고령화 정도</b></li> <li><b>4. 사회기반시설 부족 정도</b></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변경)</b> 표현의 간소화</li> </ul>
<p><b>제5조(기본계획의 수립)</b>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b>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b>하여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li> <li>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li> <li>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li> <li>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의 조사·분석을 위한 <b>지표 개발</b></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5조(기본계획의 수립)</b>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b>그 타당성을 재검토</b>하여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및 권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li> <li>2.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li> <li>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li> <li>4. 지역 및 권역에 대한 발전도의 조사·분석을 위한 <b>지표에 관한 사항</b></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삭제)</b>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재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매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li> <li>• <b>(변경)</b> 5년마다 관련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지표의 안정성·신뢰성 측면에서 부적합. 따라서 지표의 개발·수정·보완을 의미하는 ‘지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li> </ul>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p> <p><b>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정당성과 실행가능성 제고</li> </ul>
<p><b>제6조(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b>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 아닌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연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제5조에 따른 기본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p>	<p><b>제6조(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별도 수립)</b>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이 아닌 지역과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을 연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을 제5조에 따른 기본 계획과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p>	
<p><b>제7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b>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b>제7조(시행계획의 수립)</b>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및 삭제) 제7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조문명에서 '평가 등'을 삭제</li> </ul>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b>제8조(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b>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최 전까지 <b>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b> 제출해야 한다.</p>	<p><b>제8조(지역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b>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최 전까지 <b>의회에</b> 제출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 제5조제4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여 ‘의회’로 변경</li> </ul>
<p><b>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 및 추진)</b></p> <p>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내 시·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b>제9조(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립·추진·평가)</b></p> <p>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 내 시·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b>도지사는 전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컨설팅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조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제7조제2항의 평가 관련 내용을 제9조제3항으로 이동하여 제9조 조문명에 ‘평가’를 추가</li> <li>• (추가) 평가 외에도 컨설팅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을 명시하는 것이 적함</li> </ul>
<p><b>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①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4.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b> ①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 지원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4. 지역균형발전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先)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li> <li>2. 위촉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회 의원 2명</li> <li>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2명</li> <li>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li> </ol> <p>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11조(위원회의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先)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b>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원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연직 위원: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li> <li>2. 위촉직 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의회 의원 2명</li> <li>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2명</li> <li>다. <b>지역발전 분야 대학교수</b></li> <li>라. <b>지역발전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b></li> <li>마.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li> </ol> </li> </ol> <p>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과대 대표 방지에 필요</li> <li>• (추가) 투명한 선정 과정을 위해, 위촉직 위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li> </ul>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⑧ 의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p> <p>⑨ 위원에게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⑩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⑧ 의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p> <p>⑨ 위원에게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의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⑩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p>	
<p><b>제12조(위원의 해촉)</b>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제11조제10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b>제12조(위원의 해촉)</b>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제11조제10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p><b>제13조(위원회의 운영)</b>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li> <li>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p>	<p><b>제13조(위원회의 운영)</b>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li> <li>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p>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p> <p>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p>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p> <p>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p> <p>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b>제14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p>	<p><b>제14조(간사)</b>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p> <p>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p>	
<p><b>제15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북자치도 내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 수행</li> <li>2.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b>평가 및 점검 업무 지원</b></li> <li>3.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li> <li>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b>제15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b>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북자치도 내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 수행</li> <li>2. <b>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수행</b></li> <li>3.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b>평가·컨설팅·점검 업무 지원</b></li> <li>4.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자문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li> <li>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필요</li> <li>• (추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업무 포함 필요</li> </ul>
<p><b>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b>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p>	<p><b>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b>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p>	

이명연 의원(안)	수정안	수정사항
<p>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p>	<p>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설치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p>	
<p><b>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b>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2. 그 밖의 수입금</li> </ol>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li> <li>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li> <li>3. 예비비 등</li> </ol>	<p><b>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b>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2. 그 밖의 수입금</li> </ol> <p>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li> <li>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li> <li>3. 예비비 등</li> </ol>	
	<p><b>제18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b>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군의 재정상황,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발전 조사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 (추가) 세출예산의 차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p>

## 제2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균형발전 조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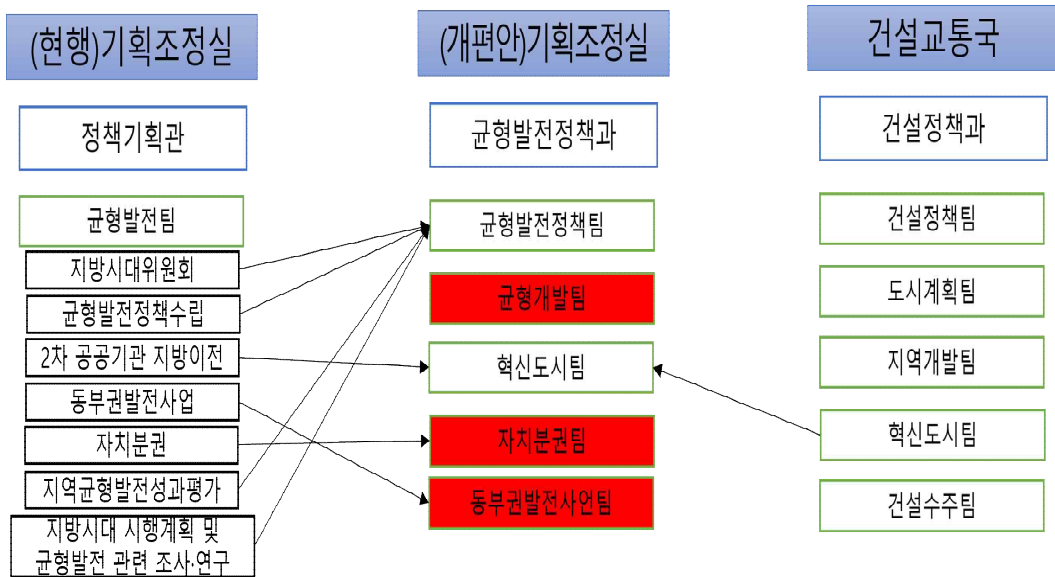
### 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 방향성

-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역으로 판단하면 업무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능동적이고 확장적인 균형발전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례분석결과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전북, 충남,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 5개 광역 도는 과 단위로 균형발전조직을 구축·운영 운영하고 있음
  - 셋째, 핵심기능으로는 지역균형정책, 지역개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기능을 고려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 동부권을 중심으로 조례 및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권 발전사업 기획과 시행을 실시하는 특정지역 중심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기획실에 배치하는 경우보다 1개가 많으나, 각 광역 도의 특성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됨

### 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안)

- 조직개편 1안
  - 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 균형발전팀을 과단위로 개편하고, 혁신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균형발전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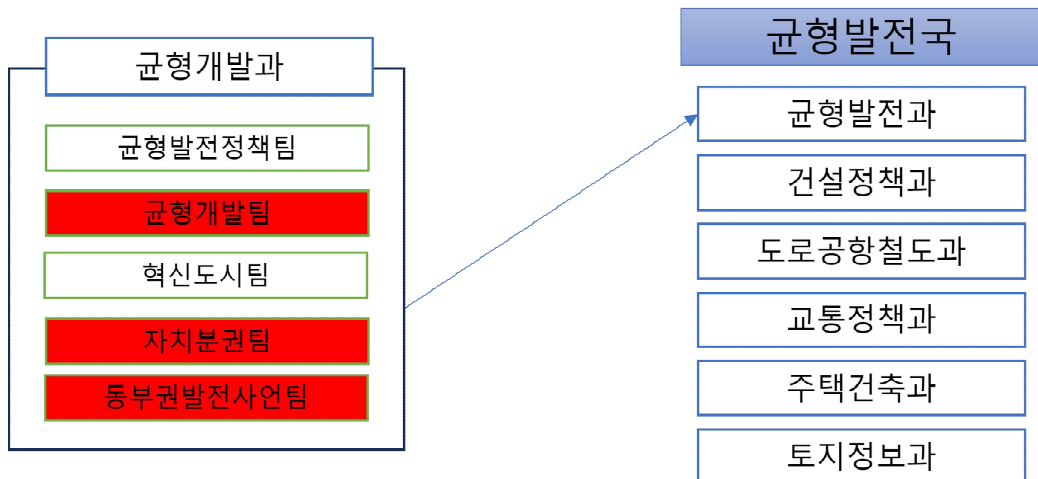
〈그림 5-1〉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1안)



○ 조직개편 2안

- 현 기획조정실 배치는 전략의 수립과 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조직에 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함
- 균형개발과를 건설교통국에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을 균형발전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 다만 2안의 경우, 균형발전의 개념이 공간개발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회 위원회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이관되어야 함

〈그림 5-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개편(2안)



### 3.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 기능 조정안

○ 조직개편 1안을 중심으로 주요 시행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5-2〉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조직의 주요기능(1안을 중심으로)

팀	주요 업무(예시)
균형발전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li> <li>•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li> <li>• 지방시대지원단 전문기관 운영</li> <li>•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업무 총괄</li> <li>• 지역균형발전 연구용역 추진</li> <li>• 균형발전 정책 및 언론 동향 업무</li> <li>•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li> <li>•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li> <li>• 균형발전사업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li> <li>• 균형발전 관련 조사·연구·지원</li> <li>• 일반사무</li> </ul>
균형개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운영</li> <li>•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li> <li>• 균형발전사업 관리카드 관리</li> <li>• 균형발전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li> <li>•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체계관리</li> <li>• 서부권 발전계획 및 협의체 관련 대응</li> <li>• 지역개발 관련 도 장기발전 구상 및 조정</li> <li>• 지역개발관련 주요현안과제 수행 및 조정</li> <li>• 지역개발계획 및 예산관리</li> <li>•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도정과제 관리 및 팀 내 업무보고 작성</li> <li>•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li> </ul>
혁신도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변경) 및 평가</li> <li>• 정주여건 개선사업 예산관리</li> <li>•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운영·관리</li> <li>• 혁신 융합캠퍼스 구축 및 운영</li> <li>•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추진</li> <li>• 이전기관 상생협력 워크숍 운영</li> <li>•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li> <li>• 혁신도시 상생(실무)협의회 운영·관리</li> <li>• 성과공유 지역균형 발전기금 운용·관리</li> <li>• 혁신도시 신 성장 거점 육성홍보</li> <li>• 혁신도시 전반 통계관리 및 분석</li> <li>•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 운영·관리</li> <li>•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관리 지원</li> <li>• 혁신도시 관련 시·군 협력</li> <li>•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li> </ul>

팀	주요 업무(예시)
자치분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업무</li> <li>•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업무</li> <li>•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추진</li> <li>• 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li> <li>• 전북 상생협력,</li> <li>• 새만금권 상생협력</li> <li>• 서울 경기 등 타시도 상생협력</li> <li>• 광역행정협의회</li> </ul>
동부권발전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대응 업무</li> <li>• 동부권 발전사업 중장기계획수립</li> <li>• 동부권 발전 사업 연간계획 수립 및 평가</li> <li>•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위원회 운영</li> <li>• 동부권 특별회계 운영·관리</li> </ul>

## 〈참고 문헌〉

### [국내문헌]

2030 정읍도시기본계획.

2040 군산도시기본계획.

강기춘. (2015). 지역균형발전 전망과 과제. 지역과 발전, 22.

경제·인문사회연구원. (2020).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국회도서관. (2022). 지역균형발전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국토교통부. (2019). [보도자료]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8). 2017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총괄 및 부문별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김동한·변필성·이성원. (2018).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연구원.

김재구. (2020).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시사점. 지역균형발전 Brief 제4호.

김현호. (2019). 포용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박진경·김상민·김도형. (2019).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뉴데일리경제. (2024.6.28.) 늘어가는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첫 '소멸위험지역'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28/2024062800258.html>  
(검색일: 2025. 02.01.)

박세훈. (2020).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박인권. (2025).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71-114.

송우경. (2017).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의 회고와 新정부의 정책방향. KIET 산업경제, 227, 37-38.

안흥기·김수진·이미영·하수정·홍사흠. (2017).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이병규. (2015).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2), 29-53.

이성근·나중규·최영은·임규채·최용준·이정미·홍근석. (2013).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한국균형발전연구, 4(3), 61-83.

이성재·한국환. (2020).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을 위한 5권 5축 특화전략 구상. 전북연구원.

이원섭·양진홍·박태선·김진범·강창민·김현호. (2018).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임인섭·변지연·오현성·이강수. (2020).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지역경제진흥원.
- 전라북도. 제1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2~2016).
- 전라북도.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발전계획(2017~2025).
- 조명래·박배균·김동완. (2013).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충남발전연구원.
-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총괄 및 부문별 발전계획
-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진승호. (202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 국토, 471, 11-17.
- 차재권. (2017). 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사회과학연구, 25(2), 130-174.
- 최진혁. (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 한경원. (2017).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과제. 국토, 434, 20- 25.
- 한국공보뉴스. (2024.1.10.) 국민 절반이 수도권 거주...비수도권과 70만명 격차 '사상 최대'  
<https://kpnnews.org/news/2406240000005606> (검색일: 2025.02.01.)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경북연구원(<http://gb-index.re.kr>)
- NABIS(<https://www.nabis.go.kr>)
- U-LEX 법률 우주(<https://www.ulex.co.kr>)